

제72주년
국군의 날

평화를 만드는
미래국군

제72주년
국군의 날



부록

특별부록

1. 「9·19 군사합의」 의의와 이행성과
2. 6·25전쟁 70주년 사업 추진
3.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4.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5. 우리 군의 코로나19 대응

일반부록

1. 주변국 군사력 현황
2.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비 현황
3. 연도별 국방비 현황
4. 남북 군사력 현황
5. 남북 경제지표 현황
6.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현황
7. 북핵문제 관련 주요 비핵화 합의
8.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경과 및 평가
9.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10. 남북 군사관계 일지
11. 북한의 대남 침투·국지도발 일지
12. 연합·합동연습 및 훈련 현황
13.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14.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15.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16.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17.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
18. 국제 방산협력협정 체결 현황
19. 국방협력협정 체결 현황
20. 국제 군축 및 비확산 협약 및 기구
21. 우리 군의 해외파병 현황
22. 병사 봉급 변화 추이
23. 현역병 복무기간 변천
24. 국방기구도
25. 국방부 소관 법령 정비 현황
26. 국회 국방위원회 구성 및 주요 활동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2020년 9월)

1. 의의

「9·19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의 군사분야 합의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 국방장관이 서명·체결한 포괄적인 군사분야 합의서이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실제적인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또한 「9·19 군사합의」는 현재도 남북 간에 지켜지고 있는 군사분야 합의서로서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가장 실효적이고 획기적인 합의서이다.

「9·19 군사합의」는 과거 남북 군사당국이 체결한 10여 차례의 군사분야 합의서들과 달리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실제적 이행조치들을 명확히 포함하고 있으며, 합의사안별로 검증절차까지 명시함으로써 합의 이행 및 검증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남북 군사당국은 상호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DMZ) 내 상호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을 완료하였고, 남북공동유해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지속 노력 중이다.

특히 남북 군사당국은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충실히 지속 이행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었고 지상·해상·공중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이행조치를 통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역사상 최초로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철수는 유엔으로부터 군사적 신뢰구축 및 재래식 군비통제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선정되었다.

이렇듯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에서 오랜 적대와 대립의 질서를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로 바꾸어 나가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꿈꿔왔던 우리 국민들의 염원과 이를 실현하고자 했던 역대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그것을 힘으로 뒷받침해왔던 우리 군의 강력한 대비태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9·19 군사합의」 체결 (2018년 9월)

2. 주요 이행성과

| 상호 적대행위 중지 | 2018년 11월 1일부터 남북이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지상-해상-공중 접경지역에 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조치를 시행한 것이 「9·19 군사합의」의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남북은 지상에서 총 10km(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으로 각각 5km)의 완충지대를 형성하여 상호 군사적 긴장 완화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남북은 지상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는 군사력이 집중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군은 과거 군사분계선 5km 이내 구역에서 다수의 포병사격 및 야외기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나,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그동안 100여 회의 총격·포격도발이 발생하는 등 수많은 충돌이 발생했던 비무장지대에서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에는 2020년 5월에 중부전선 우리 측 감시초소를 향한 총격 사건¹⁾이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사적 긴장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

해상에서는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일정구역을 해상 완충구역으로 설정하여 구역 내에서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까지 이르는 구체적 조치에 합의함으로써 무력충돌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하였다.

북한군은 과거 해상 완충구역 내에서 수많은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²⁾을 제외하고는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완충구역 내 함포·해안포의 실사격 및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해군함정의 북방한계선 침범 사례도 발생하지 않는 등 현재까지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과거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도발에 따른 무력충돌로 긴장과 분쟁의 바다였던 서해가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평화의 바다로 변모함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획기적으로 완화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서해 5도 기존 어장에 여의도 면적의 84배(245km²)에 달하는 추가 어장을 확장하였고, 1964년 야간조업을 금지한 이래 55년 만인 2019년에 야간조업도 1시간 연장하여 허용하였다. 또한 1974년 이후 45년 만에 연평도 등 대도 재점등하여 연평도 해역을 이용하는 우리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어장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을 통해 서해 5도 어업인들의 어획량이 크게 증가하여 수익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45년만에 재점등된 연평도 등대

- 1) 우리 군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우리측 수석대표 명의의 대북통지문을 통해 우려 표명과 즉각적인 중단을 북한에 요구
- 2) 우리 군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유감 표명 및 유사사예 재발 방지를 북한에 강력히 촉구

공중에서도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기종별로 비행금지구역³⁾을 설정하여 쌍방 항공기 간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과거 북한의 무인기가 10여 차례 우리 영공을 침범하기도 하였으나, 「9·19 군사합의」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정찰 및 감시 목적의 무인기 운용 사례가 전혀 없는 등 남북은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사전 통보되지 않은 비행을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대북통보 후 산불진화와 응급환자 후송 등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내 총 180여 회 헬기를 정상적으로 투입하였다.

이처럼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남북 군사당국은 접경지역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지상·해상·공중에서의 군사적 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9·19 군사합의」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과거와 같이 남북 간 접경지역에서의 무력충돌로 우리 장병과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상호 감시초소(GP) 시범철수 | 「9·19 군사합의」에서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철수는 현재 중무장화된 비무장지대를 1953년 정전협정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비무장지대로 전환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이다. 남북은 비무장지대 내 모든 감시초소를 철수하기로 합의하였고,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에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우선 철수하기로 하였다.

합의에 따라 남과 북은 2018년 11월 각각 비무장지대 내 11개 감시초소를 시범적으로 철수하였고, 역사적 상징성 및 보존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북 각각 1개의 감시초소는 완전 파괴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하였다. 또한 같은 해 12월 역사상 최초로 남북 공동검증단을 구성하여 우리 군과 북한군이 철수한 감시초소를 상호 교차 방문하여 철수 상태를 점검 및 검증하였다.

비무장지대 내 일부 감시초소가 철수되었지만 우리 군은 철수 감시초소의 경계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인접 감시초소와 일반전초(GOP) 철책선을 중심으로 무인 감시카메라(CCTV), 중거리감시카메라, 열상감시장비(TOD) 등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통한 상호 중첩된 감시체계를 운영함으로써 경계작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 측 고성지역에 있는 보존 감시초소는 2019년 6월 문화재로 등록되었으며, 고성, 철원, 파주



감시초소 시범철수 상호 검증



보존 감시초소(강원도 고성군)

3) 기종 및 지역별 비행금지구역 : 고정역(서부 20km, 동부 40km), 화전역(10km), 무인기(서부 10km, 동부 15km), 기구(25km)

지역의 철수 감시초소는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의 일부로 개방되어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1만 5천여 명의 국민이 철수 감시초소 현장을 방문하였다.

|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 남북은 정전협정 이행 및 준수를 위해 공동경비구역이 설정된 만큼 해당 취지와 명분에 맞게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원래 공동경비구역은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에서 유일하게 경비병들이 남북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1968년 8·18 도끼만행사건 이후 공동경비구역 내 군사분계선이 설정되고 자유왕래가 중단되었다. 이후 공동경비구역은 중무장화된 남북 경비병들이 가장 근거리에서 첨예하게 대립함으로써 비무장지대 내에서도 제일 위험한 장소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가 운영되었고,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2018년 10월에 완료됨에 따라 현재 공동경비구역은 권총 한 자루 없는 완전 비무장화된 35명의 경비병만이 각각 임무를 수행하는 평화와 화합의 장소로 변모되었다.

이를 통해 2019년 6월에는 역사상 최초로 남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될 수 있었다. 또한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공동경비구역 내 남측지역 견학 재개를 통해 약 2만 4천여 명의 방문객들이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변모된 공동경비구역을 체험하였다.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2019년 6월)



판문점 도보다리 견학

|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공동유해발굴 |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비무장지대 내 화살머리고지 우리 측 지역에서 지뢰제거 및 유해발굴작업을 실시하여 2020년 11월까지 400여 구의 유해와 8만 5천여 점의 유품을 발굴하였다. 발굴된 유해 중에는 국군 전사자뿐만 아니라, 유엔군(추



화살머리고지 우리측 지역 지뢰제거



DMZ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정) 및 다수의 중국군 전사자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중에서 9위(位)의 국군 전사자 유해가 신원이 확인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6·25전쟁 당시 우리 국군의 전사자 수는 13만 7천여 명이고, 이 중에서 아직도 유해조차 찾지 못한 전사자 수가 12만 4천여 명으로 약 90%에 달한다. 특히 이 중 상당수는 6·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비무장지대 내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향후 우리 군은 북한이 호응해 올 경우 남북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하여 공동유해발굴을 실시하고, 비무장지대 내 유해발굴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추진과 연계하여 남북 외에도 미국, 중국 등 6·25전쟁 참전국이 참여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 |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항행이 보장되는 수역이나 정전협정 체결 이래 특별한 몇 차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북 양측 모두가 사실상 출입을 금지했던 군사지역이다. 이렇듯 군사적 긴장상태가 지속되어 자유롭게 접근하지 못하였던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또 하나의 평화로운 공간으로 복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남북 양측은 2018년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강하구에 대한 공동수로조사를 실시하고 총 600km 이상의 수로측량구간에서 20여 개의 암초를 찾아내는 등 선박의 안전항행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확인하였다. 우리 측은 남북공동수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제작한 해도, 조사결과보고서, 소석관측자료 등을 실무접촉을 통해 북한에 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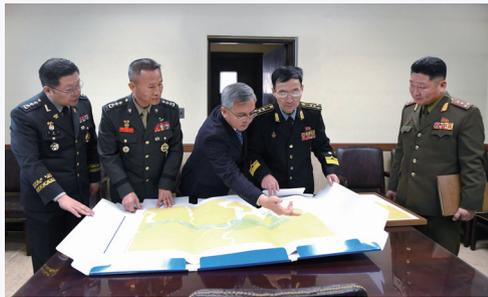
남북공동수로조사는 정전협정 이후 남북 간 접근이 제한되었던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최초로 실시된 해양조사로 이를 통해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에 필요한 항행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측은 2019년에 한강하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의 지속적인 항행과 평화적 활용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강하구 항행 시범행사를 한강하구 이남의 우리 측 지역에서 2차례 실시하였다.

향후 남북 간 실무협의를 통해 민간선박의 자유항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준비절차를 마련하고, 우리 측이 한강하구 공동이용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밀 수로조사 및 수산자원, 생태·환경 등에 대한 종합조사를 북한과 협의하는 데 있어 군사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



한강하구 해도 전달 (2019년 1월)

3. 향후 추진

우리 군은 힘을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9·19 군사합의」를 지속 이행하여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고 만들어진 평화를 굳건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현재 준수 중인 「9·19 군사합의」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안정성이 지속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는 공동경비구역 내 남북 간 상호 자유왕래, 비무장지대 내 모든 감시초소 철수, 남북공동유해발굴 및 한강하구 내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보장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북한이 호응해 올 경우 즉각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및 '남북협력'을 위한 군사적 지원 조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9·19 군사합의」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운영에 합의한 만큼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조기에 구성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는 가운데,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사안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보다 다양한 군사적 현안들이 남북 군사당국 간에 논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상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9·19 군사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1. 추진개요

정부는 매년 6·25전쟁을 기억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0년 주기로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2020년은 6·25전쟁 70주년으로 생존해 계신 국내 참전용사들의 평균 연령이 90세인 점을 고려 시, 70주년 사업은 이분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마지막 행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6·25전쟁 70주년 사업은 다른 해보다 더욱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갖는다.



6·25전쟁 70주년 사업단 발대식 (2020년 1월)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를 2020년 1월 출범시켰으며, 국방부는 별도의 사업단을 조직¹⁾하여 정부 사업추진위원회의 사업과 연계해 국방부 6·25전쟁 70주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다.

2.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 사업목적 | 6·25전쟁 70주년 사업은 국내외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 감사하고 대국민 안보의식을 고취하며, 대외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 사업추진 방향 | 사업추진 방향은 국민을 대상으로 튼튼한 안보가 평화와 번영을 구현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참전용사에게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킨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는 것이다. 또한 장병과 청소년들에게는 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6·25전쟁 70주년 정부 엠블럼

정부위원회는 6·25전쟁 70주년 사업 개념을 '기억·함께·평화'로 설정하였고, 국방부는 정부위원회 개념과 연계하여 6·25전쟁 70주년 슬로건을 '기억의 불꽃! 평화와 번영의 햇볕!'로 정하였다. '기억의 불꽃'에는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그분들의 희생을

1) 사업단 조직 : 1단계(2019.9.11.~12.31./5명), 2단계(2020.1.1.~10.31./16명), 3단계(2020.11.1.~2021.6.30./5명)

기억하려는 마음을 담았고, ‘평화와 번영의 햇불’에는 작은 불꽃이 큰 햇불이 되어 전쟁의 상처가 평화와 번영으로 승화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았다.

3. 사업편성

6·25전쟁 70주년 사업은 전승행사와 호국보훈행사, 문화예술행사, 평화체험행사로 구분하여 총 15개 사업과제로 편성하였다. 세부적으로 전승행사는 국방부 3대 전승행사²⁾와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을 통한 주요 전투체험이며, 호국보훈행사는 호국영령 추모행사(유해봉환), 유엔 참전용사 현지 위로연, 참전 여군 메모리얼 전시회 및 상기행사, 한미동맹 기억 및 감사행사로 4개 과제이다. 문화예술행사는 6·25전쟁 특별전시회, 학술회의, 호국 문예활동, 군 창작 뮤지컬 제작 및 공연, 70주년 기장 제작, 6·25전쟁 스토리텔링 홀로그램 퍼포먼스로 6개 과제이며, 평화체험행사는 청년 평화 발걸음, 서바이벌 경연대회, 한미 태권도 어울림 한마당 행사로 3개 과제로 편성하였다.

4. 주요사업 추진

| 전승행사 | ‘전승행사’는 6·25전쟁 당시 전장의 국면을 전환시킨 계기가 된 3대 주요전투의 승전을 기념하는 행사로, 지자체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참전용사 초청 및 보은행사로 진행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다수인원 집결이 제한됨에 따라 기념식 및 참배(충훈탑, 전사자 명비) 위주의 약식행사로 시행하였다. 전승기념식 또한 참전국 지휘관 영상메시지 등의 기념영상으로 대체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홍보하였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2020년 9월)

이와 더불어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을 통한 주요 전투체험을 위해 고정형 및 이동형 체험존을 제작하였다. 고정형 체험존은 전쟁기념관에 설치하였으며, 이동형 체험존은 전승행사 및 군 문화축제 등에서 참석자들의 안보관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지원이 제한되었다. 하지만 향후 각종 행사 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동형 체험존을 제작하였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 활용도는 매우 높을 것이다.

| 호국보훈행사 | ‘호국보훈행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행사로, 국군전사자 유해봉환행사와 유엔 참전용사 현지 위로연, 참전 여군 메모리얼 전시회 및 상기행사를 추진하였다. 먼저 유해봉환행사는 6·25전쟁 당시 북한지역에서 전사하였다가 발굴되어 미국 전쟁포로 및 실

2) 3대 전승행사 : 인천상륙작전(9월), 낙동강방어선전투(10월), 춘천지구전투(11월)



유해봉환 행사 (2020년 6월)



참전국 대사관 감사의 마음 전달 (2020년 10월)

종자 확인국(DPAA)에 보관 중인 국군 전사자 유해를 국내로 모셔오는 것으로 유가족, 정부 및 군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공항에서 실시하였다.

추모행사를 통해 참전용사의 넋을 기리고 그들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국가관 확립에도 기여하는 의미있는 행사였으며, 특히 송환된 유해 중 일부의 신원을 확인해 유가족의 품으로 모셔드릴 수 있어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 또한 유해봉환 과정을 '70년 만의 귀환'이라는 다큐멘터리로 제작 및 방영³⁾하여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이울러 유엔 참전용사 현지 위로연은 6·25전쟁 유엔 참전국 7개국⁴⁾을 해군 순항훈련 등과 연계하여 직접 방문함으로써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계획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지 방문이 제한되어 참전국 22개국 대사관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념영상 CD와 기념품(마스크, 형제의 상, 명함집)을 전달하였다.

또한 6·25전쟁 중에 창설된 여군 창설 70주년을 기념하여 참전 여군 활동상이 담긴 사진과 유물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감사오찬, 위로공연 대신 참전 여군분들에게 여군 보훈단체를 통해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 문화예술행사 | '문화예술행사'는 6·25전쟁의 올바른 이해와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로 특별전시회, 학술회의, 호국 문예활동, 군 창작 뮤지컬 공연, 기장 제작, 스토리텔링 홀로그램 퍼포먼스를 실시하였다.

먼저 6·25전쟁 70주년 특별전시회는 6·25전쟁과 관련된 역사성이 있는 자료를 전시하였고,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전승행사 등에는 기동형으로 순회 전시를 함으로써 국민적인 관심을 유도하였다. 또한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는 6·25전쟁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참전국에는 감사를 전하며 한국의 발전상을 홍보하였다. UCC 및 웹툰 공모는 청년세대들에게 6·25전쟁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과 동시에 나라의 소중함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공모결과 32명



군 창작 뮤지컬 공연 (2020년 9월)

3) 2020. 7. 5. SBS 방영

4) 현지방문(캐나다, 벨기에, 프랑스, 영국), 순항훈련(태국, 호주, 뉴질랜드)

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6·25전쟁의 의미를 상기하는 장병, 청소년 교육자료로 활용하였다. 더불어 6·25전쟁을 경험한 전쟁세대와 전후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군 창작 뮤지컬을 제작하여 공연을 온라인 생중계하여 많은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스토리텔링 홀로그램 퍼포먼스는 6·25전쟁의 상흔 극복과정을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한 미술공연으로, 6월 25일 전후하여 집중공연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7월 군부대 순회공연으로 대체시행하였다. 또한 온라인으로 공연내용을 홍보하여 6·25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관심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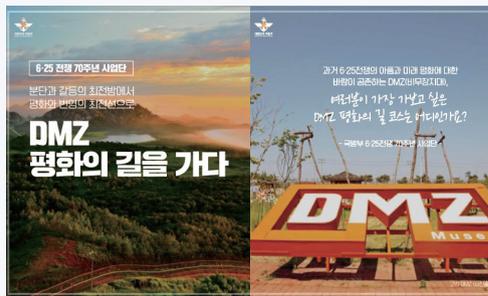
스토리텔링 홀로그램 퍼포먼스 (2020년 6~7월)

6·25전쟁 70주년 기장(旗章)은 6·25전쟁 70주년을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간부들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하기 위해 현역 간부들을 대상으로 수여하였다. 기장 내부에는 6·25전쟁 70주년을 상징하는 '대한강군'이라는 휘호를 포함하였다.

| 평화체험행사 | '평화체험행사' 중 대표적 행사인 '청년 평화 발걸음'은 미래세대의 안보관 확립을 위해 전적지 및 안보현장(DMZ, 강화도일대)을 답사하는 행사로 통일부, 교육부와 함께 국민참여단을 공개 모집하고, 총 7개 기수로 편성하여 추진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행사를 취소하였고 대신하여 참가 희망자들에게 참가복장과 기념품 등을 지급하였다.

또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상호 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 '한미동맹 기억 및 감사행사'를 시행하였다. 행사는 한미동맹에 기여한 특별초청 대상자 70명을 초청하여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미군 평택 기지에서 진행되었다.

그 외에 국내 민간동호회 및 현역장병, 미 8군 및 지역주민 등이 과학화 장비를 체험하기 위한 '서바이벌 경연대회'와 한미 친선활동으로 상호 화합 및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태권도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다.



청년 평화 발걸음 홍보자료 (2020년 6월)



한미동맹 기억·감사행사 (2020년 10월)

5. 향후 추진

6·25전쟁 70주년 사업은 유엔 참전국과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참전용사의 헌신에 감사하고, 전쟁의 상흔과 극복과정을 기억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매년 지속 시행되는 6·25전쟁 사업 역시 이러한 취지를 계승하여 그날의 기억과 희생을 잊지 않도록 추진할 것이다.

1. 대체복무제 도입 배경 및 경과

우리나라에서는 이전부터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적인 신념 등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연평균 500명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으며, 이들은 형사처분 대상으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아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었다.

〈과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재판현황〉

2001년~2018년 6월, 단위 : 년,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379	825	561	755	828	781	571	375	728	721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633	598	623	565	493	557	461	71	10,525	

*여호와의 증인 99.3%(10,454명), 개인신념 0.7%(71명)

*2018년 6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병역거부자 발생 인원은 제도시행 전까지 입영연기 하였음

2018년 6월 28일 「병역법」 제5조 제1항(병역종류조항)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및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¹⁾ 결정을 내렸고, 2018년 7월 16일 국방부 주관으로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 3개 기관은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위해 ‘대체복무 도입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추진단은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교정·소방 시설 등 복무분야 실태조사, 복무기간 등 관련 여론조사, 대국민 공청회, 전문가 자문 등²⁾을 실시하였다.



1차 공청회 실시 (2018년 10월)



2차 공청회 실시 (2018년 12월)

- 1) “현행 병역의 종류는 모두 군사훈련을 전제로 하는 등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침해하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 등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한다.”
- 2) 대체복무제도 복무형태/분야 현장 실태조사(2018년 7~8월), 대체복무제 도입 자문위원회 회의(2018년 8~12월, 6회), 당장청 회의 등(2018년 9~11월),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1차 : 2018.10.4. / 2차 : 2018.12.13.)

그 결과 2018년 12월 28일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는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복무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한다'는 내용의 대체복무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2. 대체복무제 도입 근거 마련

국방부는 대체복무 법률 제정안을 2018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2차에 걸쳐 입법예고³⁾ 한 후 2019년 4월 25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같은 해 7월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었고 9월 19일 국방위원회 주관으로 대체복무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11월 13일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의결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병무청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31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 공포되었고,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대체역법」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심사와 복무 등에 관련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대체역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병역의 종류 신설	대체역 신설
복무기간	36개월
복무분야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복무형태	합숙근무
신청자격	현역병·사회복무대상자, 예비군
복무관리	소관중앙행정기관장 및 병무청장(실태조사권 부여)
예비군 대체복무	복무완료 후 8년차까지 교정분야 복무(연간 30일 이내)
위원회 소속	병무청장
위원장 직급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
위원 수 / 상임위원 수	29명 / 5명 이내
위원 추천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국방부, 병무청, 국회, 대한변호사협회
위원 자격	교수, 법조인, 의사, 공무원, 비영리단체 근무자 등
사무기구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기구 설치

3) 1차 입법예고 : 2018.12.28. ~ 2019.2.7., 2차 입법예고 : 2019.4.9. ~ 2019.4.15.

3. 시행현황

대체복무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대체역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 구성을 2020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대체역 편입심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국방부, 병무청, 국회 국방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6개 기관에서 추천한 29명의 위원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대체역 편입대상 여부는 신청인에게 거짓이 없는지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면, 현장 및 대면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한 뒤, 사전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의결한다.

대체역 편입심사는 2020년 6월 3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7월 15일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시작하여 11월까지 730명의 편입을 결정하였다. 2020년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인원은 106명이며, 이들은 대체복무교육센터에서 3주 동안 교육을 받은 후 대전 교도소 등에 배치되어 복무 중에 있다.

1. 추진배경과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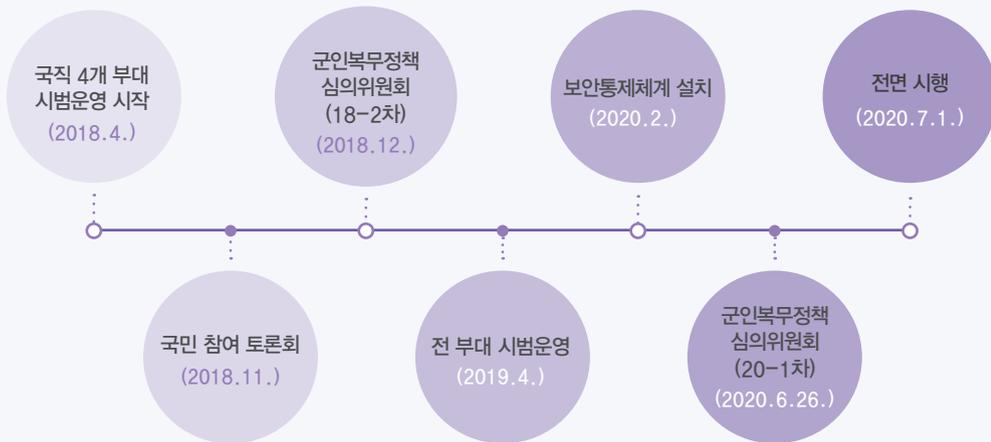
| 추진배경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추진과 함께 의무복무 병사를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고 군 복무로 인한 고립감 해소, 자기개발, 건전한 여가 선용 등을 위해 일과 이후(휴일포함)에 한하여 휴대전화 사용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이 민·군 융합을 통한 개방형 국방운영과 인권 존중의 선진병영문화 정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정책을 도입하였다.

| 휴대전화 사용 의의 | 휴대전화 사용은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통신의 자유와 직결된다. 따라서 병 휴대전화 사용은 '군복 입은 민주시민'인 병사들 또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고,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강화하여 군과 사회를 연결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2. 추진내용

| 추진 경과 | 2018년 4월부터 국방부 직할 4개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후(18:00~21:00), 휴무일(08:30~21:00)에 휴대전화 시범운영을 시작하였고, 2019년 4월에는 GP, 훈련병을 제외한 전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각종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보안통제체계(국방 모바일보안 앱)를 개발 구축하였으며, 27개월간의 시범운영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긍정적인 측면이 확인되어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¹⁾(2020.6.26.)를 거쳐 2020년 7월 1일부로 전면시행하였다.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도입 추진 경과〉



| 규정 및 제도 정비 | 건전한 휴대전화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개정하였다. 제·개정된 규정은 자율과 책임 하에 휴대전화를 사용·관리하고, 휴대전화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 시 적절한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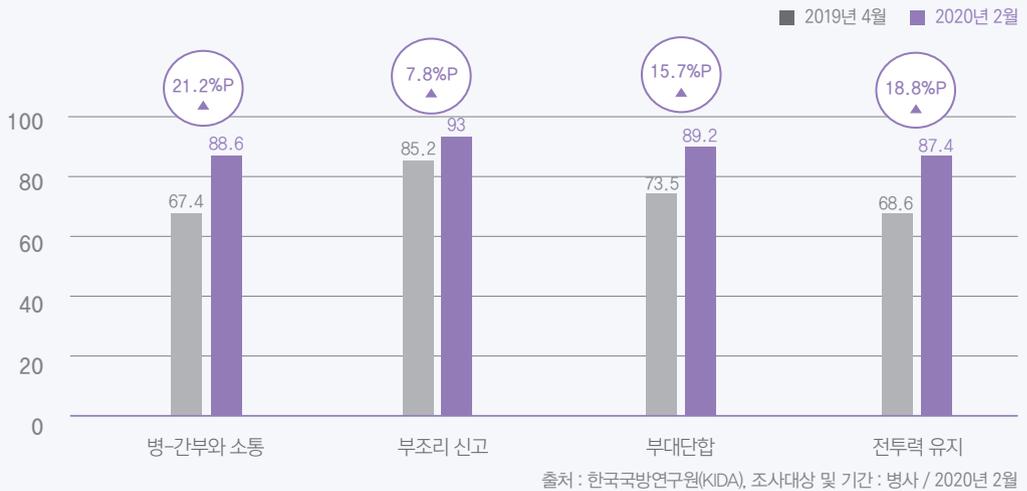
〈휴대전화 사용 관련 각종 제도 및 지침〉

1. 병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 라인」 제정	4. 「국방보안업무 훈령」 개정
2. 「군 장병 SNS 활용 길라잡이」 개정	5.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 제정
3. 「국방사이버기강 통합관리훈령」 개정	6. 보안통제체계 ‘국방모바일보안’ 설치

3. 성과 및 평가

| 지휘여건의 변화 | 휴대전화 사용을 통해 상호 소통과 병영 부조리 신고가 활성화되어 부대원 간 단합 및 전투력이 향상되었고, 휴대전화 사용을 통한 심리·정서적 안정이 무형의 전력에 영향을 미쳐 전투력 유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또한, 강압적 지시 탈피 등 지휘 활동의 투명성과 합리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코로나19 등 비전투 위기상황에서 장병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등으로 전투력 유지가 가능토록 하여 지휘여건을 보장하였다.

〈휴대전화 시범운영 간 지휘여건 변화에 대한 영향분석 결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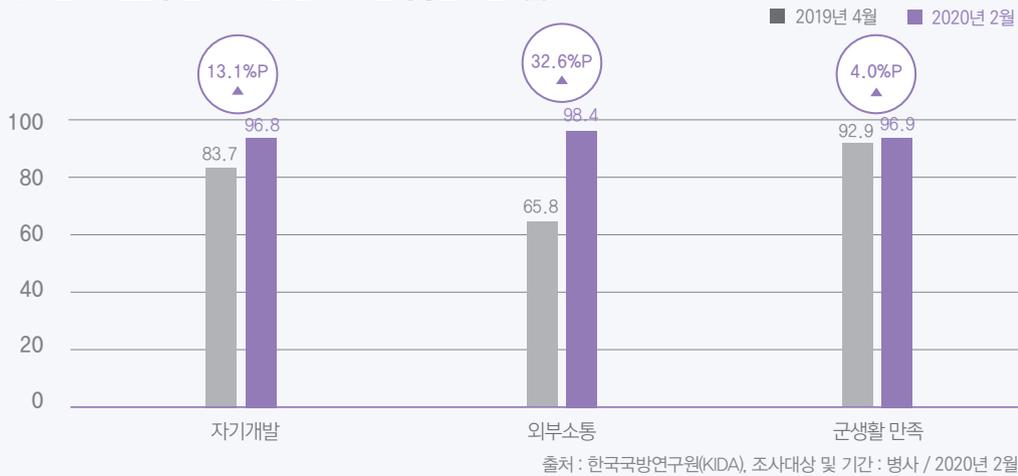
- 1)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8조에 따라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의무, 군인복무기본정책서 수립, 군인 복무와 관련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기구이며,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민간 위촉위원(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

| 병영생활의 변화 | 휴대전화 사용은 인터넷 강의 및 실시간 정보 획득 등 자기개발 활동과 외부와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우울·고립감·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대인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되어 군 복무 적응에 매개 역할을 하였다. 휴대전화는 장기적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병영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육군)

<휴대전화 시범운영 간 지휘여건 변화에 대한 영향분석 결과(2)>



| 개인 편의 증대 | 통신비용 절감을 위해 병 맞춤형 요금제를 출시하여 평소 통신비용(공중전화 등)으로 무제한 통화 및 데이터 사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상대적인 통신비용이 감소하였고, 대중교통 및 문화생활 예약, 온라인 활동 등의 편의 증대에 기여하였다.

| 역기능 예방 노력 |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도입에 앞서 사이버 불법도박, 게임중독, 음란물 시청 등 일부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 사행산업통합감독



국방 모바일보안 앱 사용현장 확인



휴대전화 사용 장병 간담회

위원회(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전문강사를 통한 예방 교육, 군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및 활용, 군 전문강사 양성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방 모바일보안 앱' 개발 및 설치로 휴대전화 촬영기능을 차단하는 등 보안통제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실효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 코로나19 극복 |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휴가, 외출·외박이 통제되면서 병사들은 복무피로감과 스트레스 심화 등 코로나 블루(Corona Blue)²⁾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휴대전화 사용은 감염병 관련 정보 검색, 온라인 종교예배,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의 원격심리상담, 부모 등 가족·친구들과의 영상통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병사들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휴대전화 사용이 ‘코로나 블루’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데 큰 역할”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육군 ○○사단에서 근무하는 양○○ 상병은 한시적인 영상통화 허용 덕분에 감염전담병원인 충주 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돌보고 있는 누나에게 응원 영상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다. 또한, 프랑스인인 아내와 결혼한 지 2개월 만에 입대하여 육군 ○○사단에서 근무하는 이○○ 병장은 9개월 만에 프랑스 디종에 있는 아내와 영상통화를 함으로써 코로나19 상황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더욱 걱정되었던 아내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청년드림(DREAM), 국군드림 모바일 앱 개발 | 병영 내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허용되었으나, 청년장병 자기개발 및 행정 지원을 위한 국방 모바일 플랫폼이 부재하였다. 따라서 국방부는 병사들이 자기개발 및 군 복무 적응 등에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청년드림(DREAM), 국군드림’ 모바일 앱을 2020년 1월 1일 개설하였다. ‘청년드림(DREAM), 국군드림’ 모바일 앱은 ‘청년드림(DREAM), 국군드림’ 정책³⁾을 모바일로 지원하는 앱으로서, 복지혜택, 취업/창업, 학습, 건강, 리더십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모바일 휴가증, 휴가 병사 철도예약 기능 등을 통해 편의성을 도모하고 건강한 군 복무를 위해 필요한 기능이나 각 실행기관·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던 성폭력 피해신고·상담, 병영생활부적응 상담, 심신 건강 테스트 사이트 등 고충 상담 및 소통공간을 앱에 통합하였다. 앞으로도 병사들이 휴대전화로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고충 상담 플랫폼을 개발하고, 다양한 온라인 복지혜택을 발굴하여 병영생활의 도우미로서 다양하고 질 높은 콘텐츠가 담긴 앱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2) 코로나 블루(Corona Blue)는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등을 의미
 3) 장병들의 생산적 군 복무로 동기를 유발하고, 역량을 증진하여 전역 후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범국가적 차원의 정책으로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대학 확대, 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 진로도움프로그램, 창업경진대회 등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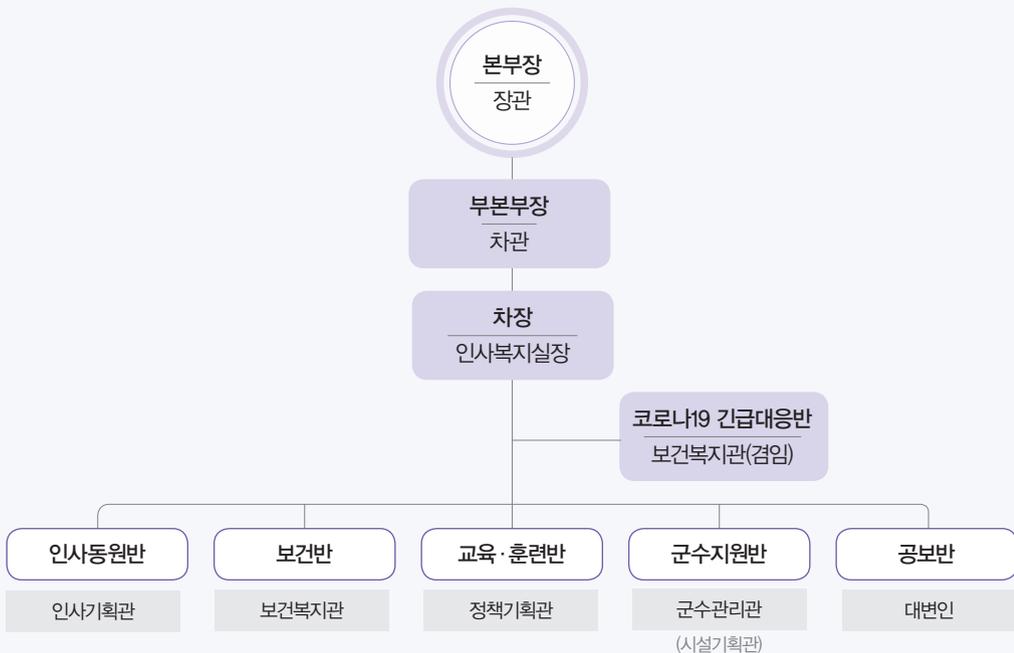
1. 군 코로나19 대응체계

| 국방부 및 각 군 대응체계 | 우리 군은 코로나19 사태를 '전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군내 유입 및 확산 차단과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등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2020년 1월 보건당국이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국방부는 군 감염병 대응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방부 방역대책본부'를 24시간 체제로 즉시 가동하였다. 또한 2월 대구·경북 지역 집단감염으로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 '국방부 코로나19 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하였다. 이후 7월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긴급한 현안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코로나19 긴급대응반'을 정식 조직으로 신설하여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해 나가고 있다. 각 군과 국군의무사령부 또한 자체적으로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군내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내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외 확진자 발생 현황과 정부의 주요 조치 동향을 공유 및 분석하기 위하여 매일 2회(오전, 오후) 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중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고 주요 지휘관 및 기관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하여 전방위적으로 방역 및 대응태세를 면밀히 점검하였다.

〈국방부 코로나19 대책본부〉





제5차 긴급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2020년 11월)

| 대외 협력 체계 | 국방부 코로나19 대책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상시 소통하였다. 또한, 보건당국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공무원 및 군 인력을 파견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나아가 국내외 민·관·군 전문가들과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다. 2020년 4월 방역·검역·의료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코로나19 방역전문가 자문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발생 추이 분석을 통해 향후 발생 양상을 예측하고 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방향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상황에서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위해 국군의무사령부를 중심으로 미국, 우즈베키스탄 등과 ‘국제 군 의무 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각국의 군 의료체계와 코로나19 발생 및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코로나19 방역전문가 자문 화상회의 (2020년 4월)



한·우즈베키스탄 군 의무 협력회의 (2020년 6월)

2. 군내 감염 유입·확산 차단

| 예방적 격리 및 적극적 진단검사 | 군은 집단생활을 하는 특성상 감염병에 취약하고, 감염 확산이 곧 군의 전투력과도 직결되므로 우리 군은 보건당국 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예방적 격리’ 기준을 적용하고,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을 최소화하였다.

국방부 「코로나19 관련 장병 격리 및 PCR¹⁾ 검사 지침」에 따르면 보건당국의 격리 기준에 확진자의 2차 접촉자, 확진자와 동선 일치자 등을 예방적 격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다. 예방적 격리자의 경우 1인 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격리시설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코호트 격리²⁾ 조치하였다.

〈코로나19 격리 기준〉

보건당국 격리 기준	국방부 자체 예방적 격리 기준
① 확진자 ② 확진자의 접촉자 ③ 의사환자 ④ 조사대상 유증상자 ⑤ 해외귀국 후 14일 이내인 자	① 보건당국 격리 기준 ② 확진자의 2차 접촉자 ③ 확진자와 동선 일치자 ④ 조사대상 유증상자로서 검사결과 음성인 자 중 보건당국이 격리 지시하거나 의료진이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⑤ 해외 귀국 후 14일 이내인 자의 접촉자

우리 군은 감염 유입 및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PCR 검사를 병행하였다. 보건당국 기준 격리자 외에 국방부 자체 예방적 격리 기준 대상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 신속히 확진자를 식별하였고, 이를 통해 군내 추가적인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군내 감염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과 협조하여 5월부터 입영 장정 전원에 대한 PCR 검사를 시행하였고, 11월까지 총 16만여 명을 검사하였다. 해외파병부대 복귀자의 경우에는 입국 후 1차 PCR 검사 실시 및 2주간 격리 조치하고, 격리해제 전에도 2차 PCR 검사를 실시하여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였다.

| 확진자 발생 시 대응 |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확진자 발생을 인지한 즉시 해당 부대에서 국방부 및 국군의무사령부에 보고하고 관할 지역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영내외 병력 이동을 통제하였다. 국군의무사령부와 각 군 의무부대는 군 중앙역학조사관을 편성하고 상황에 따라 관할 지역보건소와 합동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확진자 및 접촉자의 동선을 파악하였으며, 접촉자 분류 및 PCR 검사, 방역 및 소독 등 조치를 통해 감염경로를 확인하고 군과 지역사회로의 추가적인 감염 확산을 차단하였다. 확진자는 군 의료기관 또는 민간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였으며, 군은 퇴원 및 부대 복귀까지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특히, 장기간 입원과 예방적 격리에 따른 확진자의 우울 및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심리 지원을 실시하였고, 부대원들의 완치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병 대상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였다.

| 탄력적 부대관리 | 우리 군은 보건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휴가, 장병 출타, 간부 이동을 통제하였으며, 회식 및 사적모임, 종교활동, 다중밀집시설 방문 등에 대한 부대관리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현장지휘관 판단하에 세부사항을 유연하게 운영하였다.

1) '중합효소연쇄반응(PCR) 검사'로 의심 환자의 침이나 가래 등 가검물에서 RNA를 채취해 확진자의 RNA와 비교하여 일정 비율 이상 일치하면 양성을 판정하는 검사방법
 2) 감염병을 막기 위해 특정 집단이나 건물 등을 통째로 봉쇄해 격리하는 방역 조치

2020년 2월 21일 군내에서 확진자가 처음 발생하자 국방부는 2월 22일부로 모든 장병의 휴가, 외출, 외박, 면회를 금지하였다. 이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건당국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1개월 앞서 시행한 특단의 조치였다. 이후에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보건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휴가와 외출 제한 등에 대한 부대관리 지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휴가와 외출이 지속적으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장병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영내 체육 및 단결활동을 실시하고, 심리상담을 적극 지원하며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공군 20전투비행단 e-스포츠 경연대회 (2020년 3월)

| 생활방역 실천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장병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개인 생활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국방부는 2020년 4월 기본지침 이외 업무, 일상, 여가 분야별 세부 지침이 담겨 있는 「장병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수립하였다. 또한 '슬기로운 병영생활 3·6·5 캠페인'을 실시하여, 부대방역(3), 공공방역(6), 개인방역(5) 핵심수칙을 1년 365일 실천함으로써 정상체온 36.5℃를 유지하자는 취지에 대한 장병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슬기로운 병영생활 3·6·5' 캠페인 카드뉴스

〈장병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개요

365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건강(정상체온 36.5℃) 유지			
기본지침	부대방역(3)	공공방역(6)	개인방역(5)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방역관리자 지정 ② 탄력적인 일과 시행 ③ 출입자 확인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매일 환기, 소독 ② 손소독제 비치, 활용 ③ 건강거리 두기(1~2m) ④ 부대출입 시 발열 체크 ⑤ 동료에 대한 배려 ⑥ 다중밀집시설 이용 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마스크 착용 생활화 ② 30초 손 씻기 생활화 ③ 기침예절 준수 ④ 개인 물품 사용하기 ⑤ 아프면 즉각 보고
세부지침	업무(7)	일상(7)	여가(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반(사무·행정·작업 등) ② 회의장 ③ 지휘통제·훈련·경계 ④ 민원업무 ⑤ 행사장 ⑥ 교육장 ⑦ 시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활관 ② 군 주거시설 ③ 교통수단 ④ 병영식당 등 ⑤ 병영도서관 등 ⑥ 의료기관 ⑦ 종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군 숙박시설 ② 군마트 등 ③ 야외활동 ④ 이·미용실 ⑤ 목욕·샤워 ⑥ 공연·영화 ⑦ 노래방 ⑧ 실내체육시설 ⑨ 사이버지식방 등 ⑩ 면회실

| 혼합검체 분석법 채택 | 국군의학연구소는 대구·경북지역 확진자 급증에 따라 검사 정확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대량 검사를 신속하게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코로나19 진단검사에 '혼합검체 분석법(Pooling method)'을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검체를 채취하고 혼합하는 방식은 검체가 희석되어 정확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으나, 혼합검체 분석법은 검체 채취 단계에서 하나의 배지에 면봉을 혼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하나의 배지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면봉 개수를 최대 5개로 제한하여 정확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군은 2020년 3월부터 장병 중 음성 확률이 높은 인원을 대상으로 혼합검체 분석법을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검사 횟수는 줄이면서 검사량을 3~4배로 늘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도입 초기 군 인력의 우려가 있었으나, 질병관리청에서 650회에 걸친 평가시험으로 혼합검체 분석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4월에는 질병관리청이 해당 분석법을 코로나19 정식 진단검사법으로 채택하여 요양병원 등 집단검사에 활용하고 있다.

| 교육·훈련 조정 시행 | 국방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국내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비군훈련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2020년 예비군 소집훈련을 미실시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대면 원격교육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예비군훈련 대상자 전원은 훈련 이수 처리되었고, 11월부터 화생방 등 전투기술 과제, 예비군 복무 등 소개교육 과제로 구성된 자율참여식 원격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필수 교육훈련 소요와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각종 교육·훈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시행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부대훈련, 신병교육, 학교교육, 외래강사 초빙, 견학·현장실습, 해외 연합훈련 등에 대한 기본원칙을 수립하였고, 세부사항은 현장지휘관 판단 하에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였다.

교육·훈련 중 외래강사와 민간인 접촉은 최소화하였으며, 실내교육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소규모 단위로 조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였다. 해외 연합훈련의 경우에는 작전성 검토 외에 코로나19 영향도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지침을 강화하였다.

| 코로나19 앱 개발 | 국군의무사령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전 세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앱을 개발하고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였다.

2020년 3월 현직 군의관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 중증도 분류 앱', 검사대상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 앱인 '코로나19 체크업 앱', 지정한 사람들과 체온 등 건강상태를 공유하고 기록하는 '우리건강지킴이 앱'을 개발하였다.



예비군훈련 원격교육 시스템



'코로나19 체크업 앱'을 개발한 허준영 대위

이 중 '코로나19 체크업 앱'은 세계보건기구 DHA 사업³⁾의 코로나19 솔루션으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이후 국군의무사령부는 코로나19 관련 모든 앱 서비스를 종합 및 보완하여 '코로나19 체크업 앱' 통합버전을 개발하였고,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코로나19 체크업 앱' 화면

3. 범정부 코로나19 대응 지원

| 국방신속지원단 | 우리 군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국민의 군대'로서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을 적극 지원하였다. 국방부는 전국적인 수송 소요 발생 등 기존의 재난과는 다른 양상의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3월부터 '국방신속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국방신속지원단은 지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민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5개 전담팀(방역, 물자, 수송, 시설, 복지)과 지역전담부대를 상설화하여 가용한 인력과 장비, 물자를 즉각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전담팀은 전국을 4개 권역(서울·경기, 대구·경북, 대전·충청, 기타)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고, 지역전담부대는 전국 시도 단위에 '군 신속 지원 협력관'을 파견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청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 소요를 파악하여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담팀별로 군 지원 소요, 실적, 계획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국방신속지원단 일일 상황평가회의 (2020년 3월)

| 의료인력 및 병상 지원 | 국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인력 및 병상 부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군은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4만 1천여 명의 군의관과 간호인력을 검역소, 병원, 임시생활시설, 선별진료소 등에 파견하였다. 특히, 지난 2월 대구·경북지역에 신규로 임용되는 공중보건기사 742명의 군사교육 시기를 조정하고 조기 임용하여 즉시 현장 대응인력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군의관으로 입영 예정인 의무사관후보생 중 대구·경북지역 의료지원 희망자 96명의 군사교육기간을 단축하여 파견하고,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 일정을 조정하여 신입간호장교 75명 전원을 임관과 동시에 국군대구병원에 투입하는 등 확진자 치료에 적극 기여하였다. 군 의료인력은 현장에서 검체 채취, 진단검사, 역학조사, 확진자 치료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424개의 군 병원 음압병상을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용으로 제공하여 병상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였다. 국군수도병원은 국가지정음압병상(9병상)을 경증~중등증 환자용으로 지원하다가 중환자용으로

3)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의료 관련 분야에 도움을 주는 각국의 솔루션을 찾아 전 세계에 제공하는 사업 (DHA : Digital Health Atlas)



국군의무사령부 검체 채취 지원 (2020년 5월)



국군외상센터 음압병상 확진자 입원치료 훈련 (2020년 9월)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는 경증~중등증 환자용 음압병상(40병상)을 지원하고 있다. 국군대구병원(303병상)과 국군대전병원(72병상)은 지난 2월 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대구·경북지역 확진자 치료에 기여하였다. 특히, 국군대구병원은 신속한 음압병상 확보를 위해 군사작전에 준하는 태세로 일일 최대 100여 명의 공병 인력을 투입하여 7일 만에 98개의 일반병상을 303개의 음압병상으로 전환하고 300여 명의 확진자를 입원 치료하였다.

| 인력 및 시설 지원 | 우리 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설된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선별진료소 등의 운영을 위해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22만여 명의 인력을 지원하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먼저,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생활치료센터와 해외에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및 교민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식사 배달, 물품 분류 등 확진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2~3월 대구·경북 지역에는 전국에서 자원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13명이 '마음방역 상담관'으로 파견되어 자가격리로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 8천여 명에 대하여 총 2천여 시간 동안 심리상담을 지원하였다.



마음방역 상담관 대구·경북 상담 지원 (2020년 4월)

또한, 지난 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교민이 귀국함에 따라 격리 기간 중 교민들의 생활 공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항 및 의료기관과의 접근성, 시설 규모, 편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방어학원을 교민 임시생활시설로 제공하였다.

| 검역 및 방역 지원 | 우리 군은 해외 입국자에 의한 감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20개 공항·항만 검역소에 10만여 명의 검역 및 통역 인력을 지원하였다. 검역 지원인력이 가장 많이 투입된 인천공항은 수도군단과 9공수특전여단을 중심으로 현장지휘소를 운영함으로써 공항 내 범정부지원단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검역대별 인원 편성, 임무 부여 및 교육, 작전 지원 등 제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나아가 지원 장병의 개인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단 한 명의 감염자 없이 무사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도로 및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요양시설 및 학교 등 유동 인원이 많아 위험하고 코로나19 감염



인천국제공항 군 검역지원 (2020년 6월)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특수장비 활용 정밀방역 실시

에 취약한 곳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방역'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2월부터 11월까지 3만 3천여 명의 인력과 소독기, 제독차량 등 2만 4천여 대의 장비가 투입되었다. 3월에는 대구·경북지역의 방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육군 7군단 및 미사일사령부를 중심으로 1천여 명의 인력과 3백여 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코호트 격리시설 등 고위험지역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였다. 이후에도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가 화생방 작전에 운용되는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정밀방역을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가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군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였다.

| 수송 지원 | 우리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한 방역물자 수송, 재외교민 귀국 등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수송전담팀을 신설하고, 군 수송기, 대통령 전용기, 공중급유수송기 등을 투입하여 수송을 지원하였다. 2020년 2월 마스크 수급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급하는 방역 및 구호물자를 전국에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우리 군은 360여 대의 차량을 동원하여 마스크 1천 3백만 장과 방호복 81만 세트 등 방역 물품, 생수를 비롯한 각종 구호물품을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송하였다. 3월에는 국방부, 외교부, 주미안남대사관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군 수송기를 긴급 투입하여 미안남에서 제작된 방호복 8만 세트를 21시간 만에 수송하여 적시에 의료진에게 방호복을 보급할 수 있었다.

또한 해외에 소재한 우리 국민과 교민의 귀국을 지원하였다. 2월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을 때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여 크루즈선에 승선한 우리 국민 7명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5월에는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된 한빛부대 11진과 12진 교대 과정에서 전세기로 아프리카 교민 60명의 귀국을 지원하였고, 7월에는 감염병의 위협에 노출된 이라크 파견



공군 수송기 미안남 방역물자 수송 (2020년 3월)



일본 크루즈선 승선 국민 이송 지원 (2020년 2월)

건설근로자 293명의 무사 귀환을 위하여 최초로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를 투입하였다.

| 영농활동 지원 | 농촌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원봉사 인력 감소 등 일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우리 군은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2만 4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영농활동을 지원하였다. 각 군은 작전 및 임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모내기, 농기계 수리, 배꽃 인공수분 등을 지원하여 농가에 큰 힘이 되었다.

특히, 지원 과정에서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지원 지역의 안전도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장병 대상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 중에는 마스크 등 개인방역물품을 충분히 보급하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육군 귀리쌀 재배지원 (2020년 5월)

| 군 단체헌혈 |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자 전국 혈액 보유량이 3일 이하로 감소하는 등 국가적으로 혈액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 반복되었다. 우리 군은 '사랑의 헌혈운동 캠페인', '헌혈 릴레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5천 3백여 개 부대에서 28만여 건의 단체헌혈을 실시함으로써 따뜻한 생명나눔을 실천하였다. 국방부는 헌혈 과정에서 장병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혈전담팀을 구성하고 채혈직원은 반드시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건강상태를 일일 2회 모니터링하고 채혈직원과 헌혈자의 마스크 착용을 면밀히 관리하였다.



육군 사랑의 헌혈운동 (2020년 9월)

4.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우리 군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고강도 감염차단 대책을 시행하고 각종 작전·훈련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지휘통제실, 비상대기실 등 핵심 군사시설에 대하여 차별화된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예비시설을 준비하여 기존 시설이 오염되더라도 지휘통제 및 비상대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비상대기전력, 감사대응전력 등 핵심전력은 사공간을 분리 운영함으로써 감염 등으로 전력운영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대기전력

4) 적정 혈액 보유량은 5일 이상

이 정상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국내 확진자가 급증하던 시기에는 작전활동을 선별적으로 조정하여 시행하였다. 침투·국지도발 훈련은 감염 예방대책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주둔지 내에서 절차훈련을 시행하였고, 시기·규모·방법 등을 부대별 여건에 맞추어 실시하였다. 각급 부대순찰 및 점검 활동은 지휘관 위주로 실시하여 인원 이동을 최소화하였고, 녹음기 취역시기를 고려하여 민간인 접촉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역대책 강구 하에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우리 군의
코로나19 대응

주변국 군사력 현황

총괄

구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총 병력	1,373,050	900,000	2,035,000	247,150
육군	481,750	280,000	975,000	150,850
해군	337,100	150,000	250,000	45,350
공군	325,900	165,000	395,000	46,950
기타	해병대 186,300 해안경비 42,000	공수 45,000 전략미사일 50,000 지휘/지원 180,000 철도군 29,000 특수군 1,000 준군사 554,000	로켓군 120,000 전략지원군 175,000 기타 120,000	통막 4,000

육군

구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사단	10	9(여단 98)	집단군 13	9(여단 6)
전차(대)	MBT 5,689	13,000	5,850	617
보병전투차량(대)	IFV 4,931	13,660	5,800	68
정찰차(대)	RECCE 2,545	2,700	350(경전차)	111
장갑차(대)	APC 18,547	12,100	3,950	795
견인포(문)	1,339	12,565	2,484	340
자주포(문)	998	5,870	2,140	172
다련장포(문)	600	4,082	1,570	99
박격포(문)	2,507	4,130	2,800	1,105
대전차 유도무기(기)	SP 1,133	GUN 2,526	SP 1,000 RCL 3,966 GUN 1,788	SP 37
지대공미사일(기)	1,183	1,520	524	327
헬기(대)	3,875	-	1,015	385
항공기(대)	211	-	10	7

해군

구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전술잠수함(척)	53	39	55	21
전략핵잠수함(척)	14	10	4	-
항공모함(척)	11	1	2	-
순양함(척)	24	4	-	-
구축함(척)	67	13	28	40
호위함(척)	19	15	52	11
초계함-연안전투함정(척)	84	118	209	6
소해함(척)	11	43	54	25
상륙지휘함/상륙함(척)	2 / 32	20	49	3
상륙정(척)	131	28	67	8
지원함(척)	12	269	148	18
전투기(대)	716	157	318	-
헬기(대)	692	198	113	122
해병사단(개)	해병원정군 3	여단 3	여단 7	
전차(대)	447	300	75	
보병전투차량(대)	488	1,061	10	
상륙돌격장갑차(대)	1,200	-	152	
병력수송장갑차(대)	207	400	-	
해병전력	2,579	-	-	
야포(문)	1,452	383	40	
대전차미사일(기)	106	-	-	
UAV·ISR(대)	180	-	-	
전투기(대)	432	-	-	
틸트로터 수송기	309	-	-	
헬기(대)	435	-	-	

공군

구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전략폭격기(대)	139	138	176	-
폭격기(대)	-	-	794	-
정찰기(대)	ISR 40	58	51	14
지휘기(대)	4	11	5	-
전투기(대)	FTR·FGA·ATK 1,383	888	899	338
수송기(대)	TPT 331	442	336	57
급유기(대)	TKR/TPT 237	15	13	6
조기경보기(대)	AWE&C·EW 31	9	13	18
훈련기(대)	TRG 1,126	227	1,012	247
헬기(대)	136	822	53	54
민간예비(대)	국제/국내선 민항기 553	-	-	-
전자전기(대)	ELINT 22	34	18	3

* 출처: 『The Military Balance 2020』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20년 2월)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비 현황

2019년 기준

국가	GDP(억 달러)	국방비(억 달러)	GDP 대비 국방비(%)	병력(천 명)	국민 1인당 국방비(달러)
대한민국	16,463	425	2.43	579	816
미국	224,400	6,846	3.19	1,380	2,063
일본	51,500	486	0.94	247	386
중국	141,000	1,811	1.28	2,035	130
러시아	16,400	482	2.94	900	340
대만	5,860	109	1.87	163	464
영국	27,400	548	2.00	148	837
프랑스	27,100	523	1.93	204	773
독일	38,600	485	1.26	181	604
이스라엘	3,880	193	5.82	170	2,254
이집트	3,020	34	1.54	439	33
사우디아라비아	7,790	784	10.06	227	2,331
호주	13,800	255	1.85	57	1,074
터키	7,440	81	1.09	355	99
말레이시아	3,650	33	0.91	113	103
태국	5,290	71	1.34	361	103
싱가포르	3,630	113	3.11	51	1,846
캐나다	23,000	187	1.08	67	518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20」(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20년 2월), 대한민국은 정부통계 기준

연도별 국방비 현황

연도	국방비(억원)		GDP대비 국방비(%)		정부재정대비 국방비(%)		국방비 증가율(%)	
	본예산	추경예산	본예산	추경예산	본예산	추경예산	본예산	추경예산
1991	7조 4,524	7조 4,764	3.07	3.08	27.4	23.8	12.3	12.6
1992	8조 4,100	8조 4,100	3.03	3.03	25.1	25.1	12.8	12.5
1993	9조 2,154	9조 2,154	2.92	2.92	24.2	24.2	9.6	9.6
1994	10조 0,753	10조 0,753	2.70	2.70	23.3	23.3	9.3	9.3
1995	11조 0,744	11조 0,744	2.53	2.53	21.3	21.3	9.9	9.9
1996	12조 2,434	12조 2,434	2.49	2.49	21.1	20.8	10.6	10.6
1997	13조 7,865	13조 7,865	2.54	2.54	20.4	20.7	12.6	12.6
1998	14조 6,275	13조 8,000	2.72	2.57	20.8	18.3	6.1	0.1
1999	13조 7,490	13조 7,490	2.32	2.32	17.2	16.4	△6.0	△0.4
2000	14조 4,390	14조 4,774	2.22	2.22	16.7	16.3	5.0	5.3
2001	15조 3,884	15조 3,884	2.18	2.18	16.3	15.5	6.6	6.3
2002	16조 3,640	16조 3,640	2.09	2.09	15.5	14.9	6.3	6.3
2003	17조 4,264	17조 5,148	2.08	2.09	15.6	14.8	6.5	7.0
2004	18조 9,412	18조 9,412	2.09	2.09	16.0	15.8	8.7	8.1
2005	20조 8,226	21조 1,026	2.17	2.20	15.5	15.6	9.9	11.4
2006	22조 5,129	22조 5,129	2.24	2.24	15.5	15.3	8.1	6.7
2007	24조 4,972	24조 4,972	2.25	2.25	15.7	15.7	8.8	8.8
2008	26조 6,490	26조 6,490	2.31	2.31	15.2	14.8	8.8	8.8
2009	28조 5,326	28조 9,803	2.37	2.40	14.5	14.2	7.1	8.7
2010	29조 5,627	29조 5,627	2.24	2.24	14.7	14.7	3.6	2.0
2011	31조 4,031	31조 4,031	2.26	2.26	15.0	15.0	6.2	6.2
2012	32조 9,576	32조 9,576	2.29	2.29	14.8	14.8	5.0	5.0
2013	34조 3,453	34조 4,970	2.29	2.30	14.5	14.3	4.2	4.7
2014	35조 7,056	35조 7,056	2.28	2.28	14.4	14.4	4.0	3.5
2015	37조 4,560	37조 5,550	2.26	2.27	14.5	14.3	4.9	5.2
2016	38조 7,995	38조 8,421	2.23	2.23	14.5	13.9	3.6	3.4
2017	40조 3,347	40조 3,347	2.20	2.20	14.7	14.2	4.0	3.8
2018	43조 1,581	43조 1,581	2.27	2.27	14.3	14.2	7.0	7.0
2019	46조 6,971	46조 6,971	(2.43)	(2.43)	14.1	14.0	8.2	8.2
2020	50조 1,527	48조 3,782	(2.62)	(2.52)	14.1	12.4	7.4	3.6

*GDP :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2015년 기준

*2020년은 기획재정부 명목 GDP 예상치 기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향, 2020년 12월)

※ 명목 GDP : GDP를 구하는 해의 생산물에 당해연도 가격을 적용

남북 군사력 현황

2020년 12월 기준

구분		한국	북한		
병력(평시)	육군	42만여 명	110만여 명		
	해군	7.0만여 명 (해병대 2.9만여 명 포함)	6만여 명		
	공군	6.5만여 명	11만여 명		
	전략군	-	1만여 명		
	계	55.5만여 명	128만여 명		
주요전력	부대	군단(급)	(해병대 포함) 13	15	
		사단	(해병대 포함) 37	84	
		여단(독립여단)	(해병대 포함) 34	117	
	육군	전차	(해병대 포함) 2,130여 대	4,300여 대	
		장갑차	(해병대 포함) 3,000여 대	2,600여 대	
	장비	야포	(해병대 포함) 6,000여 문	8,800여 문	
		다련장 / 방사포	(해병대 포함) 270여 문	5,500여 문	
		지대지 유도무기	발사대 60여 기 (전략군)	발사대 100여 기	
	해군	수상함정	전투함정	100여 척	430여 척
			상륙함정	10여 척	250여 척
잠수함정		기뢰전함정(소해정)	10여 척	20여 척	
		지원함정	20여 척	40여 척	
		잠수함정	10여 척	70여 척	
공군	전투임무기	410여 대	810여 대		
	감시통제기	(해군 포함) 70여 대 (정찰기)	30여 대		
	공중기동기(AN-2포함)	50여 대	350여 대		
	훈련기	190여 대	80여 대		
헬기(육해공군)		660여 대	290여 대		
예비병력		310만여 명 (사관후보생, 전시기로소집, 전환/대체 복무 인원 등 포함)	762만여 명 (교도대,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등 포함)		

* 남북 군사력 비교를 위해 육군 부대·장비 항목에 타군 부대·장비도 포함하여 산출
 * 북한군 야포문수는 보병 연대급 화포인 76.2mm를 제외하고 산출
 * 남북 군사력 현황은 양적 비교만 제시하였음. 군사력을 실질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양적 비교뿐만 아니라 장비성능 및 노후도, 훈련수준, 합동전력 운용개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육군 여단 비교의 경우 군단급 이상 제대에 편성된 독립여단인 포병, 공병, 항공여단 등을 포함하여 비교한 것임. 따라서 북한 2개 기계화군단 예하에 있었던 14개 여단은 해당 군단이 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북한 육군 여단 수치에 미포함
 * 북한 특수작전군 병력은 북한 육군·해군·공군 등에 포함되어 있음

남북 경제지표 현황

구분	한국		북한		한국/북한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명목GNI(조 원)	1,905.8	1,935.7	35.9	35.6	53.1배	54.4배
1인당GNI(만 원)	3,693.0	3,743.5	142.8	140.8	25.9배	26.6배
경제성장률(%)	2.9	2.0	-4.1	0.4	-	-
무역총액(억 달러)	11,400.6	10,455.8	28.4	32.4	400.9배	322.2배
총인구(천 명)	51,607	51,709	25,132	25,250	2.1배	2.0배

*출처 : 한국은행

*GNI (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 1993년부터 유엔(UN),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에서 GNP 대신 사용
(GNI=GNP)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현황

구분	배경	주요 내용(요약)
1695호 (2006.7.15.)	장거리미사일 발사 (2006.7.5.)	· 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활동 관련 물자, 기술, 금융자원 이전을 방지하고 감시할 것을 요구
1718호 (2006.10.14.)	1차 핵실험 (2006.10.9.)	· 금수조치, 화물검색 도입, 제재대상 자산동결 및 여행통제 ·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산하에 북한제재위원회 설치
1874호 (2009.6.12.)	2차 핵실험 (2009.5.25.)	· 소형무기 수입을 제외한 전면 무기 금수 · 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활동에 기여 가능한 금융거래 금지 · 북한제재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문가 패널 설치
2087호 (2013.1.22.)	장거리미사일 발사 (2012.12.12.)	· 공해상 의심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추진 · '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통제 강화 · 북한 금융기관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2094호 (2013.3.7.)	3차 핵실험 (2013.2.12.)	· 핵·미사일 관련 금수 품목 확대 · 금융제재 강화(결의 위반 은행의 해외 신규활동 금지 등)
2270호 (2016.3.2.)	4차 핵실험 (2016.1.6.) /장거리미사일 발사 (2016.2.7.)	· 북한과의 군·경 협력 금지 · 북한 행·발 화물 검색 의무화, 제재 대상 선박 또는 불법활동 연루 의심 선박 입항 금지 · 북한 은행의 해외 지점·사무소의 90일 내 폐쇄 · 북한산 광물(석탄, 철, 금 등) 수입 금지 조치 도입
2321호 (2016.11.30.)	5차 핵실험 (2016.9.9.)	·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 금지 · 북한에 대한 항공기·선박 대여 및 승무원 제공 금지, 북한 행·발 여행용 수하물 검색의무 명시 · 북한 내 외국 금융기관 전면 폐쇄 · 수출금지 광물(은, 동, 아연, 니켈) 추가 및 소형물 수출 금지 · 북한산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
2356호 (2017.6.2.)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17.5.14.)	· 제재 대상 지정 확대
2371호 (2017.8.5.)	탄도미사일 발사 (2017.7.4., 7.28.)	· 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무기 이중용도 통제 품목 추가 · 북한제재위원회에 금지활동과 연관된 선박 지정 권한 부여 및 회원국의 동 선박 입항 불허 의무 · 회원국들의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제한 · 북한 석탄, 철, 철광석 수출 전면 금지 · 북한 납 및 납광석, 해산물 수출 금지
2375호 (2017.9.11.)	6차 핵실험 (2017.9.3.)	· 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무기 이중용도 통제 품목 추가 · 기국 동의하 금지품목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 촉구 ·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부여 금지 · 대북 유류 공급 제한 ·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2397호 (2017.12.22.)	화성-15형 발사 (2017.11.29.)	· 영토 및 영해에서 금수품 운송 또는 금지활동 연루 의심 선박 대상 나포, 검색, 억류 · 북한 해외노동자 24개월 내 송환 · 대북 유류 공급 제한 · 북한의 식료품,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광물 및 토석류, 목재류, 선박 수출 금지 · 대북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청갈 및 여타 금속류 수출 금지 · 조업권 거래 금지 명확화

북핵문제 관련 주요 비핵화 합의

합의	주요 내용(요약)
① 제네바 기본합의 (1994. 10.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흑연감속로를 경수로로 대체하기 위한 협력 · 북미 간 정치·경제 관계의 완전 정상화 지향 ·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안보를 위한 협력 · 핵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
② 9·1 공동성명 (2005. 9.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재확인 · 에너지, 교역,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증진 약속 ·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에 약속 · 단계적 방식의 합의 이행 조치 합의
③ 2·13합의 (2007. 2.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내 핵시설의 폐쇄·봉인 및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 복귀, 모든 핵프로그램 목록 작성 합의 ·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대화 개시 ·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 직접적 관련 당사국 간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④ 10·3합의 (2007. 1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모든 현존 핵시설 불능화 및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 완료 · 북한은 핵 물질,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 재확인 · 중유 100만 톤 상당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공
⑤ 2·29합의 (2012. 2.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 비핵화 사전조치 실행 · 미, 24만 톤의 영양지원 제공 · 미, 대북 적대이사 없음을 확인 · 북미관계 개선 및 문화·교육·체육 등 민간교류 확대
⑥ 판문점선언 (2018. 4.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번영 및 자주통일 ·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⑦ 북미공동성명 (2018. 6.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 한반도의 항구적·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 북한의 「판문점선언」 재확인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 전쟁포로, 전쟁실종자의 유해수습 및 신원확인 유해송환
⑧ 평양공동선언 (2018. 9.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교류·협력 증대 ·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적 폐기 · 미측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경과 및 평가

1. 핵 개발 경과 및 평가

| 핵 기반시설 구축 | 북한은 6·25전쟁이 끝난 직후 전후 복구와 동시에 원자력에 관한 기초연구, 인력 양성 등 핵에너지 활용을 위한 기반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1955년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에 핵 물리강좌를 개설하였고 1956년에는 국가과학원(구 과학원)에 핵물리실험실을 설치하였다. 특히 1956년 「북소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면서 구소련 드브나(Dubna) 핵연구소에 과학자들을 파견하여 선진기술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1959년에는 중국과도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1963년 구소련의 도움을 받아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하였고, 이를 토대로 1965년부터 평북 영변에 대규모 핵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평산, 순천, 박천 등의 우라늄 광산 개발과 채광된 우라늄을 정련하기 위한 시설 등도 건설하였다. 이처럼 북한은 풍부한 우라늄 자원을 바탕으로 핵시설들을 차례대로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 핵 개발 본격화 | 북한은 1980년대 들어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 구비, 우수한 핵 전문인력 양성, 핵실험장 건설 등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장하면서 본격적인 핵 개발에 착수하였다. 영변에 조성된 핵단지에 플루토늄 생산에 필요한 핵심시설인 원자로, 재처리시설, 핵연료제조공장 등이 차례대로 완공되었다. 북한은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5MWe 흑연감속용 원자로를 1986년 완공하여 가동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방사화학실험실을 1985년에 착공, 1989년부터 가동하였다. 이와 동시에 영변 단지 내 50MWe 흑연감속용 원자로가 1995년 완공을 목표로 착공되었고, 태천에는 200MWe 흑연감속용 원자로 건설 계획을 수립하였다.



영변에 위치한 5MWe 원자로

1989년 프랑스 상업 위성에 의해 영변 핵단지가 노출되면서 북한의 비밀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후 국제사회의 압력에 의해 1991년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 간 안전조치협정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결과 북한의 핵활동 신고 내역에 중대한 불일치가 발견되면서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은 더욱 논란이 되었다. 추가 확인을 요구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 요청은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이어졌고 클린턴 행정부는 군사 옵션까지 검토하였으나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기본합의」¹⁾ 타결로 북핵문제가 극적으로 봉합²⁾됨으로써 북한의 핵활동은 이후 2002년까지 한동안 동결되었다.

1)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 간 3차례 고위급회담을 통해 합의문을 채택 (1994. 10. 21.)

2) 북한의 핵개발 동결포기를 대가로 미국은 중유 제공, 경수로 2기 건설, 북미 관계 정상화 등에 합의

그러나 북한은 「제네바 기본합의」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에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아 비밀리에 우리 농축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우리 농축 추진에 대해 북한은 한동안 존재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2010년 미국의 헤커 박사를 초청하여 우리 농축시설을 대외에 전격 공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우려를 가중시켰다.

2002년 부시 행정부는 「제네바 기본합의」의 불완전성과 북한의 우리 농축활동 의혹을 제기하며 「제네바 기본합의」 파기를 선언하였고 북한에 대한 중유 지원과 경수로 건설 중단을 선언하였다. 이에 북한도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 추방, 영변 핵시설의 동결 해제, 사용후핵연료봉의 재처리 조치를 취함으로써 핵물질 생산을 전격적으로 재개하였다. 이후 북한은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친 재처리를 통해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하였으며,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 선언에 이어 2006년 10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최초의 지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당시 우리나라 기상청에 의해 탐지된 인공지진파의 강도는 약 3.9mb로 측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평가된 핵폭발 위력은 1kt 미만이었다. 이러한 핵실험 결과에 기초하여 분석된 북한의 핵기술 수준은 실전에 운용하기에는 미흡하였으나 최소한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고 폭발시킬 수 있는 단계에는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핵능력 고도화 | 북한은 1차 핵실험 이후 핵탄두의 위력 증대, 미사일 탑재, 대량생산 등에 초점을 맞추고 핵능력 고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북한은 6자회담이 진행되던 2008년 말까지 영변 핵단지 내 주요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를 단행하며 핵물질 생산을 잠정 중단하였다. 그러나 검증 문제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6자회담이 더 이상 개최되지 못하면서 2009년에 북한은 불능화가 진행 중인 핵시설을 재가동하였고, 같은 해 5월에는 2차 핵실험까지 감행하였다. 2차 핵실험에서 보여준 핵폭발 위력은 1차 핵실험보다 한층 증가한 약 3~4kt의 위력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과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무기의 위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실전에 사용하기에는 여전히 기술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한 핵실험 현황>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일시	2006.10.9.(월). 10:36	2009.5.25.(월). 09:54	2013.2.12.(화). 11:57	2016.1.6.(수). 10:30	2016.9.9.(금). 09:30	2017.9.3.(일). 12:29
규모(mb)	3.9	4.5	4.9	4.8	5.0	5.7
위력(kt)	약 0.8	약 3~4	약 6~7	약 6	약 10	약 50

2012년 이후 북한은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내세우면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결과 2013년 2월, 2016년 1월과 9월, 2017년 9월 등 4차례의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특히 6차 핵실험에서 보여준 핵폭발 위력은 약 50kt으로 이는 과거 핵실험에 비해 현저히 증대되어 수소탄 시험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수차례 핵실험 직후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면서 '핵탄두의 표준화·규격화·소형화·경량화·다중화 달성'을 주장³⁾하였고 핵탄두와 미사일의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 의사 등을 표명하였다.

2. 미사일 개발 경과 및 평가

북한은 핵·고폭탄·화생무기의 장거리 투발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1960년대 중반부터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여 왔다. 1976년 이집트로부터 스커드-B를 도입 후 역설계를 통해 스커드 미사일의 자체 생산에 성공하였고, 이를 개량하여 1988년에 작전배치를 완료하였다. 1990년대에는 사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을 개발하여 작전배치를 완료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1998년에는 대포동 1호를, 2006년과 2009년, 2012년, 2016년에는 대포동 2호를 위성 발사 명분하에 발사하였다. 또한 구 소련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을 도입하여 사거리 3,000km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인 무수단을 개발하여 시험발사 없이 2007년에 작전배치하였고,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하였다.

2016년에는 신형 고출력 미사일 엔진인 백두산 엔진 개발에 성공하여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개발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2017년 5월과 8월, 9월에는 중거리탄도미사일급으로 평가되는 화성-12형을 시험발사하였고, 2017년 7월과 11월에 대륙간탄도미사일급으로 평가되는 화성-14형과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하였다.

또한 2016년 8월에는 구 소련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여 고래급 잠수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북극성)을 시험발사하였으며, 2017년 이를 지상형으로 개조한 북극성-2형을 2차례 시험발사하였다. 2019년에는 다양한 형태의 신형 고체추진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플랫폼(차륜형, 궤도형)을 개발하여 시험발사하였고, 신형 수중사출장비를 이용하여 북극성-3형도 시험발사(2019.10.2.)하였다.

-
- 3) 북한이 주장하는 표준화·규격화·소형화·경량화·다중화의 의미(2013.5.21. 노동신문 / 2016.9.9. 핵무기연구소 성명)
- 표준화 : 여러 종류의 미사일에 탑재될 수 있도록 핵탄두를 표준화하는 것을 의미
 - 규격화 :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핵탄두와 그 부품을 규격화하는 것을 의미
 - 소형화 : 핵탄두의 폭발력을 15kt 이하인 무기를 만드는 것을 의미
 - 경량화 : 미사일 탑재를 위하여 핵탄두의 총체적 질량을 가볍게 만드는 것을 의미
 - 다중화 : 해당 군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종류의 핵무기를 만드는 것으로 핵반응 방식에 따라 원자수소중성자탄, 파괴력·사거리에 따라 전략·전술·전역 핵무기 등으로 구분 가능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현황〉

2019년 1월 1일 이후

일자	주요내용
2019. 5. 4.	함남 호도반도에서 19-1 SRBM(차륜형)(북 주장, 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
2019. 5. 9.	평북 구성에서 19-1 SRBM(궤도형)(북 주장, 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
2019. 7. 25.	함남 호도반도에서 19-1 SRBM(차륜형)(북 주장, 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
2019. 7. 31.	강원 원산에서 19-2 미상 미사일(북 주장,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 발사
2019. 8. 2.	함남 영흥에서 19-3 미상 미사일(북 주장,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 발사
2019. 8. 6.	함남 과일에서 19-1 SRBM(차륜형)(북 주장, 신형전술유도탄) 발사
2019. 8. 10.	함남 함흥에서 19-4 SRBM(북 주장, 새무기) 발사
2019. 8. 16.	강원 통천에서 19-4 SRBM(북 주장, 새무기) 발사
2019. 8. 24.	함남 선덕에서 19-5 SRBM(차륜형)(북 주장, 초대형방사포) 발사
2019. 9. 10.	평남 개천에서 19-5 SRBM(차륜형)(북 주장, 초대형방사포) 발사
2019. 10. 2.	강원 문천 인근 해상에서 19-6 SLBM((북 주장, 북극성-3형) 발사
2019. 10. 31.	평남 순천에서 19-5 SRBM(차륜형)(북 주장, 초대형방사포) 발사
2019. 11. 28.	함남 연포에서 19-5 SRBM(차륜형)(북 주장, 초대형방사포) 발사
2020. 3. 2.	강원 원산에서 19-5 SRBM(차륜형)(북 주장, 방사탄) 발사
2020. 3. 9.	함남 선덕 인근에서 19-5 SRBM(차륜형)(북 주장, 전선장거리포) 발사
2020. 3. 21.	평북 선천에서 19-4 SRBM(북 주장, 전술유도무기) 발사
2020. 3. 29.	강원 원산에서 19-5 SRBM(궤도형)(북 주장, 초대형방사포) 발사

〈북한 미사일 종류 및 제원〉

구분	SCUD-B/C	19-1 SRBM	19-4 SRBM	19-5 SRBM	SCUD-ER	노동	무수단
사거리(km)	300~500	약 600	약 600 미만	약 400	약 1,000	1,300	3,000 이상
탄두중량(kg)	1,000	미상	미상	미상	500	700	650
비고	작전배치	시험발사	시험발사	시험발사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구분	대포동 2호	북극성/북극성-2형	북극성-3형	화성-12형	화성-14형	화성-15형
사거리(km)	10,000 이상	약 1,300	약 2,000	5,000	10,000 이상	10,000 이상
탄두중량(kg)	500~1,000	650	미상	650	미상	1,000
비고	발사	시험발사	시험발사	시험발사	시험발사	시험발사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에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화재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 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붙임 1】**
-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붙임 2】**
-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붙임 3】**
-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군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붙임 4】**
-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통신·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붙임 5】**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③ 쌍방은 남북군사당국 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9월 19일

대	한	민	국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부	장	관	인	민	무	력	상					
송		영		무	조	선	인	민	군	대	장	노	광	철

【붙임 1】

비무장지대 내 상호 감시초소(GP) 철수

1. 비무장지대 내 모든 감시초소를 완전히 철수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 ① 1단계 : 모든 화기 및 장비 철수
- ② 2단계 : 근무인원 철수
- ③ 3단계 : 시설물 완전파괴
- ④ 4단계 : 상호 검증

2. 비무장지대내 모든 감시초소 철수를 위한 제반 조치들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진행한다.

3. 비무장지대 안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사적물과 유적, 유물들은 민족공동의 재산으로 원래 상태를 보존하여 관리한다.

4. 비무장지대 안의 1km 거리 내에 근접해 있는 양측의 11개 감시초소를 시범적으로 철수한다.

① 지역별로 철수할 양측 감시초소들은 다음과 같다.

– 동부지역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1273호와 제1278호 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1123호와 제1135호 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0799호와 제0808호 사이의 쌍방초소

– 중부지역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52호와 제0660호 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79호와 제0683호 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0717호와 제0724호 사이의 쌍방초소

– 서부지역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23호와 제0027호 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34호와 제0043호 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0155호와 제0166호 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0212호와 제0216호 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0233호와 제0240호 사이의 쌍방초소

② 양측의 11개 감시초소들에 대한 철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

【붙임 2】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1. 첫 단계로 남북유엔사 3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조치 방안을 협의 이행한다.

- ① 남북유엔사(이하 3자로 표기)는 2018년 10월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지뢰를 20일 안에 제거한다.
- ②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지뢰제거가 완료된 때로부터 5일 내에 쌍방초소들과 인원 및 화력장비를 전부 철수한다.
- ③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 불필요한 감시장비를 철수하고, 협의를 통해 필요한 감시장비를 추가 설치하며,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 ④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조치 완료 상태를 2일간 공동으로 검증한다.
- ⑤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조치 완료 이후의 공동관리기구 구성 및 임무, 공동관리기구 운영 방식 등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비무장화 조치 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관리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경비근무조직 및 초소 설치
 - 경비근무는 양측이 각각 35명 이하의 비무장 인원으로 수행한다.
 - 경비근무 인원의 교대 및 순찰과 관련한 사항은 쌍방이 각자 규정하고 상호 통보한다.
 - 양측 경비근무 인원들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판문점 민사경찰」이라고 쓴 너비 15cm의 완장을 왼팔에 착용한다.
 - 공동경비구역 북측지역 「판문점 다리」 끝점에 남측 초소를, 남측지역 진입초소 일대에 북측 초소를 새로 설치하며, 남과 북이 근접하여 근무한다.
- ② 건물 관리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자기측 건물들은 각측이 관리한다.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건물을 보수 또는 새로 건설해야 할 경우, 공동관리기구의 승인하에 진행한다.
- ③ 참관(방문)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대한 참관은 09시부터 17시까지의 사이에 진행한다.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관광객들과 참관 인원들의 자유왕래를 허용한다.

【붙임 3】

비무장지대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

1.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 설정과 지뢰제거

①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 설정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은 강원도 철원지역 비무장지대의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489호~제0497호 구간에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의 끝점좌표는 다음과 같다.

- 북측 : ㄱ) 북위 38° 17' 35" 동경 127° 05' 22"
 ㄴ) 북위 38° 18' 23" 동경 127° 06' 52"
- 남측 : ㄱ) 북위 38° 16' 38" 동경 127° 06' 04"
 ㄴ) 북위 38° 17' 26" 동경 127° 07' 33"

- 공동유해발굴지역에 있는 양측의 감시초소와 장애물들은 전부 철수한다.

② 지뢰제거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의 지뢰와 폭발물은 2018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완전히 제거한다.
- 쌍방은 비무장지대 자기측 경계선으로부터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지뢰제거 작업을 진행한다.
- 쌍방은 지뢰제거 작업을 10시부터 12시까지, 15시부터 17시까지 총 4시간 진행하며, 경우에 따라 작업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한다.
- 쌍방은 시범 공동유해발굴지역내 지뢰가 제거된 구역의 외곽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표식물을 설치하며, 그에 대하여 상대측에 통보한다.
- 지뢰제거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 이용은 상호 협조한다.
- 지뢰제거 과정에서 발굴되는 유해들은 수습하여 공동으로 감식, 협의, 처리한다.

2. 공동유해발굴지역내 남북도로 개설

- ① 비무장지대 공동유해발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내에 남북간 12m 폭의 도로를 개설한다.
- ② 도로는 각각 비무장지대 각측 경계선으로부터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나가면서 지뢰제거 작업을 선행한 후 개설하며, 군사분계선상에서 연결한다.
- ③ 굴착기를 비롯하여 도로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이용에 대해 상호 협조한다.
- ④ 도로개설 작업 인원과 장비들의 수량과 식별표식, 작업시간은 각기 편리하게 정하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⑤ 도로연결과 관련하여 일방의 인원이나 차량들이 군사 분계선을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에 통보한다.
- ⑥ 도로개설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

3. 공동유해발굴단 구성과 운영

① 공동유해발굴단의 구성

- 쌍방은 대령급을 책임자로 하여 각각 5명씩의 유해발굴 공동조사 및 현장지휘조를 구성한다.
- 유해발굴단은 쌍방에서 각각 80~100명 정도로 구성한다.
- 쌍방은 2019년 2월 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하여 상호 통보한다.

② 공동유해발굴단의 운영

- 유해발굴 공동조사 및 현장지휘조는 비무장지대의 시범적 공동유해발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공동으로 협의하여 해결한다.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의 공동유해발굴은 2019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진행한다.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의 유해발굴 작업 시간은 계절 특성을 고려하여 9시부터 12시까지, 15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단축 또는 연장한다.

4. 안전보장 및 공동관리

- ① 공동유해발굴 과정에서 상대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에 침해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한다
- ② 공동유해발굴지역에 무기, 폭발물 등 신변안전에 위협하는 물자 및 장비의 반입을 불허한다.
- ③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④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복구 대책을 수립하여 상호 협력한다.
- ⑤ 공동유해발굴이 완료된 후 중앙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측 경계선까지의 지역과 도로에 대해서는 각측이 책임지고 관리하며, 도로이용과 관련한 문제는 추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붙임 4】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및 평화수역 설정,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

1. 평화수역 설정

1) 평화수역 범위

평화수역 범위는 쌍방의 관할하에 있는 섬들의 지리적 위치, 선박들의 항해밀도, 고정항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2) 평화수역 출입 질서

- ① 평화수역에는 쌍방의 비무장선박들만 출입한다. 해군 함정들이 평화수역으로 불가피하게 진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하에 출입한다.
- ② 평화수역 내에서 활동하는 선박 수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선박들의 평화수역 출입 및 활동 계획은 48시간 전에 상호 통보한다.
- ③ 평화수역 출입시간은 4월부터 9월까지 7시부터 18시, 10월부터 3월까지 8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평화수역에서의 행동 질서

- ① 평화수역에서 남측 선박은 평화수역 북경계선을, 북측 선박은 평화수역 남경계선을 넘지 않으며, 평화적 활동으로만 한정한다.
평화수역을 벗어나 상대측 수역에서 상대측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는 선박들에 대해서는, 적대행위를 즉시 제지시키고 상대측에 통보한 후 남과 북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 ② 평화수역에서 쌍방 선박들은 식별을 위하여 가로 900mm×세로 600mm 크기의 한반도기를 남측 선박은 마스트 좌현 기류줄에, 북측 선박은 마스트 우현 기류줄에 게양한다.
- ③ 평화수역에서 심리전행위를 비롯하여 상대측을 자극하는 일체 언행을 하지 않는다.
- ④ 평화수역에서 민간선박들 사이에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자기측의 모든 선박 등을 평화수역 밖으로 철수시키고, 남북 군통신선 혹은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통하여 사태를 수습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운다.

4) 평화수역에서 인도주의적 협력 문제

개별 인원과 선박, 함정, 항공기 등이 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로 인한 항로미실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평화수역에 들어가는 경우 상대측에 연락 수단을 통해 즉시 통보한다.
평화수역 안에서 상기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평화수역 활용

쌍방은 서해 평화수역을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 및 공영·공리 원칙에 맞게 해양측량·공동조사, 민간선박 운항 등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2.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1) 시범 공동어로구역 범위

시범 공동어로구역 범위는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2) 시범 공동어로구역 운용질서

- ① 시범 공동어로구역에서 조업하고자 하는 어선들은 기관(소속) 명칭, 선장(대표자), 선원명단, 어선명, 출입경로, 조업일자 등이 기록된 출입신청 문건을 출입예정 2일(48시간) 전까지 상대측에 제출한다.
- ② 쌍방 해당기관은 어선의 출항예정 1일(24시간) 전까지 출입 신청서 검토 결과(동의 여부)를 상대측에 통보하되, 출입이 허가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와 함께 통보한다.
- ③ 쌍방 해당기관은 시범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일정 기간 연속조업을 신청한 어선들에 대하여 최대 5일간까지 공동어로구역내 체류를 허가한다.
- ④ 시범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어선들은 상호 승인한 경로를 이용하며 쌍방 어업지도선의 통제를 받도록 한다.
- ⑤ 향후 평화수역 내에 공동어로구역을 확대하여 설정하는 경우, 남북 어선들의 공동어로구역 출입 질서와 관련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3. 불법어선 차단 및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공동순찰

1) 남북공동순찰대 조직

- ① 쌍방은 해경정(경비정)으로 '남북공동순찰대'를 조직한다. 공동순찰정은 250톤급 이하로 한다.
- ② 공동순찰을 실시하는 순찰정은 쌍방이 각각 3척(총 6척)으로 하며 합의에 따라 척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남북공동순찰대의 순찰정들은 가로 900mm×세로 600mm 크기의 황색 깃발을 선박 마스트 상단 부분에 게양한다.

2) 남북공동순찰대의 임무

- ① 서해 해상의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통하여 평화수역에 진입하는 제3국 불법 어선들을 차단하며,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여 단속 처리한다.
- ② 시범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남북 어선들과 어업지도선 등의 항행질서를 통제한다.
- ③ 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 등으로 표류하는 쌍방의 선박들을 구조하고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돌려 보낸다.

3) 남북공동순찰대의 운용

- ① 남북공동순찰대의 순찰정들은 공동어로구역 내로 진입을 금지한다. 다만, 공동어로구역내 조난, 인명구조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상대측에 통보 후 진입할 수 있다.
- ② 공동순찰은 조업 일정과 제3국 불법조업선박 차단 등과 연계하여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한 날짜에 진행한다.
- ③ 공동순찰은 주간(4월부터 9월까지)은 8시부터 18시까지, 10월부터 3월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기측 공동순찰대의 순찰계획은 24시간 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야간에 발생하는 상황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 ④ 공동순찰은 공동어로구역 외곽선을 따라 순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상호 합의하여 기동한다.
- ⑤ 남북공동순찰대는 각기 자기측 상부의 지휘에 따라 행동하며, 쌍방 순찰정간 교신, 호출부호 등은 2004년 「6.4합의서」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 ⑥ 공동순찰 과정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며, 상황 발생 시 즉시 순찰정을 격리시키고 상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붙임 5】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의 군사적 보장

1. 공동이용수역 설정

- ①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으로부터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로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70km에 이르는 한강(임진강) 하구 수역을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한다.
- ② 공동이용수역 안에서 제기되는 모든 군사 실무적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공동조사

- ①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2018년 12월 말까지 공동으로 진행한다.
- ② 공동조사단은 쌍방에서 해당 전문가를 포함하여 각각 10여 명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 ③ 공동조사에 필요한 장비, 기재, 선박 이용 문제는 상호 협조한다.
- ④ 현장조사 인원들은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금지하며, 폭발물 및 각종 무기, 총탄 등을 휴대하지 않는다.
- ⑤ 공동조사 중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가까운 상대측 지역에 정박할 수 있으며 상대측 인원들의 신변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3. 공동이용수역에서의 군사적 보장 대책

- ① 공동이용수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선박의 형태, 길이 및 톤수, 출입목적, 탑승인원 수, 적재화물)에 대한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서해지구 남북 군통신선을 통해 1일전에 상호 통보한다.
- ② 공동이용수역내 쌍방이 합의한 위치에 각종 통행검사소를 설치하고 출입인원과 선박들에 대한 통행 검사를 진행한다.
- ③ 공동이용수역에 항행하는 선박들은 상대측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한다.
- ④ 공동이용수역에서 선박들의 통행시간은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한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는 7시부터 19시까지,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8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⑤ 공동이용수역에서 항행하는 인원 및 선박들은 정찰 및 감시 장비, 폭발물 및 각종 무기, 총탄 등을 일체 휴대하지 않는다.
- ⑥ 공동이용수역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⑦ 쌍방 선박은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항행신호 교환을 제외하고 상대측 선박과 연락 및 통신을 할 수 없다.
- ⑧ 공동이용수역 내에서 선박이나 인원이 표류하거나 기타 요인에 의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인도주의 원칙에서 상호 협력한다.

4. 공동이용수역에서의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보장 대책은 쌍방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간다.

남북 군사관계 일지

2018. 12. 1. ~ 2020. 11. 30.

북측	일자	남측
군인(1명), 22사단 DMZ 경유 월남(귀순)	2018.12.1.	
	12.4.	시범철수GP(11개소) 상호검증통로개설(12.4.~11.)
	12.9.	남북,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완료(11.5.~12.9.)
	12.12.	남북, 시범철수 GP 상호현장검증(각 11개소)
	12.28.	서해지구 군통신선 정상화 물품 북측 전달(개성)
신년사 발표 * 남북합의사항 철저이행, 협력·교류 확대발전	2019.1.1.	정부, 환영입장 발표
북중 정상회담(1.7.~10. 김정은 위원장 방중) 김영철·폼페이오 고위급회담(워싱턴)	1.8.	
	1.18.	백악관, 2차 북미정상회담 2월 말 개최 발표
	1.28.	유엔 안보리, 남북공동유해발굴 대북제재 면제
	1.30.	남북군사실무접촉, 한강하구 해도 전달
북미 정상회담 실무협상(2.6.~8., 평양) * 북(김혁철)·미(비건)	2.6.	
	2.8.	김정은 위원장, 건군절 인민무력성 방문 * “혁명무장역량의 정예화를 추진”
북미 정상회담(2.27.~28., 하노이) * 비핵화 협상 결렬	2.27.	
	3.1.	리용호 외무상, 긴급 심야 기자회견 * 제재 전면해제가 아닌 일부해제 주장
	3.2.	한미 국방장관 전화통화, ‘KR/FE’ 종료 발표
	3.3.	한미 국방당국, ‘19-1 동맹’연습 발표
	3.4.	한미, ‘19-1 동맹’연습(3.4.~12.)
	3.6.	정부, ‘을지태극연습’(5월 예정) 발표
	3.8.	유엔안보리,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대북제재 면제
	3.15.	최설희 외무성 부상, 북미회담 관련 기자회견 * “이번과 같은 협상은 할 계획이 없음”
	4.1.	화살머리고지 남측 추가지뢰제거·기초발굴 개시
	4.3.	DMZ 평화둘레길 3개소 개방 발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4.11.~12.)	4.11.	
김정은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 “북남관계를 공고한 화해 협력 관계로 전환”	4.12.	
	4.22.	한미, 연합공중훈련(2주) *기존 맥스선더 대체

북측	일자	남측
북러 정상회담(블라디보스톡) 조평통 대변인 담화, 연합공중훈련 비난 * 한미 연합공중훈련은 군사분야 합의 위반 인민무력상 연설, 평화체제 관련(모스크바) * “정전협정에서 평화체제로 이동해야”	4.25.	
	4.27.	정부, 평화퍼포먼스 개최(JSA) 정부, 고성 ‘DMZ 평화의길’(1단계) 개방
	5.1.	정부, JSA 남측지역 견학 재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원산) * 김정은 위원장, 동부 화력타격훈련 지도	5.4.	정부, 북 단거리 발사체 발사 대응 *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남”
외무성 대변인 문답 * “정상적인 군사훈련의 일환” 장령급군사회담 대표단 대변인 문답 * 우리 군 당국 비난,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 일언반구할 체면이 없음”	5.8.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평북 구성) * 김정은 위원장, 서부 화력타격훈련 지도	5.9.	정부,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매우 우려됨”
	5.10.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 * “이런 행위가 계속된다면 대화·협상을 어렵게 만들 수 있 다는 것을 북에 경고”
	5.27.	을지태극연습(5.27.~30.)
	6.1.	정부, 철원 ‘DMZ 평화의길’ 개방
	6.3.	한미 국방장관회담, UFG연습종료 발표
	6.11.	화살머리고지 유엔군 추정 유해 봉영식 해군, 동해 표류 북 어선 예인·복송
	6.15.	북한 어선(4명 탑승) 발견(동해 삼척항)
	6.18.	남→북, 북측 주민(2명) 송환(JSA)
북중 정상회담(6.20.~21., 시진핑 방북)	6.20.	
	6.30.	한미 정상회담(서울) 남북미 정상 판문점회동, 이어서 북미 회동
외무성 대변인 담화, 연합연습 중지 요구	7.16.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원산) * 김정은 위원장,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 지도	7.25.	정부,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되지 않는 것으로 강한 우려 표명”

북측	일자	남측
북, 러시아 어선 송환(한국 선원 2명, 속초항)	7.28.	해군, 동해에서 북 어선(3명 탑승) 예인·복송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원산) * 김정은 위원장,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 지도	7.31.	북 군인 추정 사체 발견(1사단, 임진강) 합참,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강한 우려 표명”
	8.1.	군인(1명), 임진강 경유 월남(귀순) 영·프·독, 북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공동성명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함남 영흥) * 김정은 위원장,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 지도	8.2.	정부,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
외무성 대변인 담화, 영·프·독 공동성명 비난 * “자주권과 자위권 농락”	8.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황남 과일) * 김정은 위원장, 신형 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 지도 외무성 대변인 담화, 연합연습 관련 비난 * “대화의 동력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	8.6.	정부,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 동향 예의주시,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 강화”
조평통 진상공개장, 연합연습 관련 비난 * “적대행위 중지 위반”	8.8.	
	8.9.	한미 국방장관회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함남 함흥) * 김정은 위원장, 새 무기 시험사격 지도	8.10.	정부, 파주 ‘DMZ 평화의길’ 개방 정부, 북 단거리 발사체 발사 대응 * “북 연이은 발사가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 우려, 중단할 것을 촉구”
외무성 미국국장 담화 * “자위적 무력건설 사업”	8.11.	한미 연합지휘소훈련(8.11.~20.) * 전작권 전환 대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강원 통천) * 김정은 위원장, 새 무기 시험사격 지도 조평통 대변인 담화, 광복절·연합연습 비난 * “남북대화의 동력이 상실된 것은 전적으로 남한 당국자의 자업자득”	8.16.	정부, 북 단거리 발사체 발사 대응 *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
외무성 대변인 담화, 전략무기 반입 비난 *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음”	8.22.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함남 선덕) * 김정은 위원장,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지도	8.24.	정부, 북 단거리 발사체 발사 대응 *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
	8.27.	영·프·독, 북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공동성명

북측	일자	남측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 * 김정은 위원장 불참, 김정은 위원장 위상·권한 강화 외무성 대변인 담화, 영·프·독 공동성명 비난 * “대화의 시점만 더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함”	8.29.	
김정은 위원장, 중앙군사위 비상확대회의 소집 * 박정현 대장 총참모장 임명	9.6.	
최설희 외무성 부상 담화, 북미 대화 제의 * “접수 가능한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	9.9.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평남 개천) * 김정은 위원장,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지도	9.10.	정부,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강한 우려, 한반도 전반적 군사안보 상황 점검”
	9.19.	유엔사·북한군 참모장교 접촉(T-3)
	9.23.	한미 정상회담(워싱턴)
	9.24.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뉴욕) *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
	9.30.	국회, 북핵 고도화·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
최설희 외무성 부상 담화, 북미 실무협상 일정 공개 * 10.4. 예비접촉, 10.5. 실무협상	10.1.	
북극성-3형(SLBM) 시험발사(원산) * 김정은 위원장 불참	10.2.	정부, 북 미사일 발사 대응 *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발사체를 발사한 데 우려, 실무협상의 성공적 개최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외교적 노력”
북미 실무협상(스톡홀름) 외무성 대사 김명길 기자회견, 협상결렬 발표	10.5.	
외무성 담화, 협상 결렬 대미 비난 * “대화의 운명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으며 그 시한부는 올해 말”	10.6.	
	10.8.	유럽연합(영,프,독,벨,폴,에), SLBM 발사 규탄 공동성명
김정은 위원장, 금강산 방문, 남측시설 철거 발언	10.23.	
	10.28.	정부, 금강산 관련 남북실무회담 제의
금강산 관련 남북실무회담 거부	10.29.	
김정은 위원장, 대통령 모친상 조의문 전달(판문점)	10.30.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평남 순천) * 김정은 위원장,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지도	10.31.	정부, 북 단거리 발사체 발사 대응 *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한 강한 우려를 표시”
	11.2.	해군, 북 어선(2명 탑승) 나포(동해 해상) * 11.7. 북측에 송환(2명)

북측	일자	남측
	11.4.	미 국방부, 한미 연합공중훈련(12월) 진행 발표
	11.5.	정부, 금강산 관련 시설점검단 방북 제의 *북한 무응답
외무성 대사 권정근 담화, 한미연합공중훈련 재개 발표 비난 *“우리에 대한 대결선언, 대화의 불씨에 찬물”	11.6.	미 국방부, 비난과 무관 훈련 진행 발표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난 *“새로운 길 이 미국의 앞날에 장차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에 대해 고민할 것임”	11.13.	미 국방부 장관, “대화 증진 위해 군사훈련 조정 가능”
김영철 담화, 한미 연합공중훈련 중단 촉구	11.14.	한미, 제51차 안보협의회의(SCM, 국방부) 영·프·독, 북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공동성명
김정은 위원장, 항공 및 반항공군 전투비행술경기대회 참관	11.16.	
	11.17.	한미 국방부 장관, 연합공중훈련 연기
김정은 위원장, 항공 및 반항공군 낙하산 침투훈련 지도 외무성 고문 김계관 담화, 북미회담 이전 적대정책 철회 촉구 *“대화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면 우리를 적으로 보는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	11.18.	트럼프 대통령, 3차 북미 정상회담 촉구
김영철 담화, 북미회담 이전 적대정책 철회 촉구 *“위협들이 깨끗이 제거된 다음에야 비핵화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외무성 대사 김영길 담화, 북미회담 이전 적대정책 철회 촉구	11.19.	
김정은 위원장, 접경도서 창린도 방어부대 시찰 *해안포 사격 지시	11.23.	
	11.25.	정부, 창린도 해안포 사격 군사합의 위반 유감표현·재발방지 촉구 * ‘항의문’ 전달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함남 연포) * 김정은 위원장,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지도	11.28.	합참, 북 단거리 발사체 발사 대응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음, 우리 군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리태성 담화, 연말시한 임박, 미국 결심 촉구 *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	12.3.	트럼프 대통령, 무력사용 가능성 언급 * “원치 않지만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
총참모장 박정천 담화 * “미국이 무력 사용하면 우리도 상응 행동”	12.4.	유엔 안보리, 북 발사체 논의 비공개 회의 * 유럽연합 6개국 공동성명/영,프,독,벨,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 “북 ‘새로운 길’ 주장 등 긴장고조, 예의주시” *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모두발언

북측	일자	남측
유엔주재 북한대사 담화, 유럽연합 6개국 공동성명 대응 *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내려졌다.”	12.7.	한미 대통령 통화, ‘비핵화 대화 모멘텀 유지 공감’
국방과학원 대변인 발표, 중대한 시험 진행 * “12.7.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	12.8.	트럼프 대통령, “북한 적대적인 행동을 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 미 국방부 장관, “북한과의 대화 언제나 열려있다”
김영철 담화 *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 당 중앙위 리수용 담화, 트럼프 막말 중단 촉구	12.9.	
	12.10.	한·호주 국방부 장관, 북 긴장고조 중단 및 대화재개 촉구
	12.11.	미 폼페이오, “북한 ICBM 발사 중단·비핵화 약속 준수 기대” 유엔 안보리 소집 미 유엔대사, “북한 담대한 결정 내려야”, “북한 ‘새로운 길’ 심각한 도발 의미” 유엔총회, 핵무기 포기 촉구 포함 결의안 3건 채택
외무성 대변인 담화, 유엔 안보리회의 대응 *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12.12.	
박정천 총참모장 담화, 중대시험 관련, 북에 대한 도발 자제 촉구 * “우리를 자극하는 그 어떤 언행도 삼가야 연말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국방과학원 대변인 발표, 중대한 시험 진행 * “12.13.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중대한 시험이 또다시 진행”	12.14.	
	12.16.	미 비건 북에 만남 제안 * 북한 미응답
	12.21.	북 선원 구조(2명) 북측 인계(동해)
김정은 위원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3차 확대회의 참석 * “중요한 군사적문제와 대책들 토의”	12.22.	
	12.24.	트럼프 대통령, 북 성탄선물 관련 “처리할 것, 지켜보자”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개최(12.28.~31.) * “강력한 정치 외교적, 군사적공세로 정면돌파전의 승리 담보”	12.28.	
신년사 생략(7기 5차 전원회의로 대체) *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	2020.1.1.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과 좋은 관계”
	1.2.	미 국방부 장관, “북 행동 따라 연합훈련 재개 검토”

북측	일자	남측
	1.10.	안보실장, 방미 귀국 *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생일 메시지 북한에 전달”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 * “트럼프 생일메시지 친서로 직접 전달, 김정은-트럼프 사이에 끼어드는 것은 주제넘은 일”	1.11.	
	1.12.	미 안보보좌관, “미국, 북한에 대화 재개 의사 전달”
코로나19 대응 국가비상방역체계 전환 선포	1.24.	
코로나19 관련 남북통행 제한 조치, 개성연락사무소 가동 잠정중단	1.30.	
코로나19 관련 금강산 철거 연기 통보 국제 항공·열차·선박편 폐쇄	1.31.	
김정은 위원장, 동부지구 방어부대 합동타격훈련 참관	2.28.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원산) * 김정은 위원장,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지도	3.2.	정부, 북 화력타격훈련 유감표명 * “군사적 긴장 초래 행동에 강한 우려”
김여정 담화 * “화력전투훈련은 자위적 행동, 유감·중단요구는 주제넘은 처사”	3.3.	
	3.6.	유엔 안보리 유럽 5개국 대사(영,프,독,벨,에), 북 도발행위 규탄 성명
외무성 대변인 담화, 안보리 5개국 규탄성명 반박 * “통상적 훈련”	3.7.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함남 선덕) * 김정은 위원장, 전선장거리포병 화력타격훈련 재차 지도	3.9.	정부, 북 단거리 발사체 발사 대응 * “대규모 합동타격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지적”
김정은 위원장, 포사격대향경기 지도(7군단, 9군단)	3.12.	
김정은 위원장, 포사격대향경기 지도(3군단, 4군단, 8군단)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평북 선천) * 김정은 위원장, 전술유도무기 시험사격 지도	3.21.	합참, 북 단거리 발사체 발사 대응 *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의 군사적 행동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이며, 즉각 중단을 촉구함”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원산) * 김정은 위원장 불참,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3.29.	정부, 북 단거리 발사체 발사 대응 * “국방부 및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음”
김정은 위원장, 박격포병 포사격훈련 지도 * “포병강화, 포병중시”	4.10.	
김정은 위원장, 서부지구 추격습격기연대 시찰	4.11.	
순항미사일 발사(김정은 위원장 불참)	4.14.	미 합참의장, 순항미사일 관련 * “도발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내부 기념행사 연결로 추정”

북측	일자	남측
GP 총격(3사단)	5.3.	합참, GP 총격 관련 대응 * “‘9·19 군사합의」 위반”
	5.6.	군, 서북도 합동방어훈련 * 공군공중전투사령부, 해군2함대
인민무력성 대변인 담화, 서해 군사훈련 비난 * “모든 것이 2018년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	5.8.	
김정은 위원장,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4차 확대회의 진행 * △핵전쟁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 △리병철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선출 등	5.24	
김여정 담화 발표 * 탈북자들의 반공화국적대행위 감행 비판	6.4	
통전부 대변인 담화 * 김여정 제1부부장의 6.4 담화에 대한 실무적 집행을 위한 검토사업(공동연락사무소 철폐 등) 착수 예고	6.5	
중통, 2020.6.9.,12시부터 ‘남북간 모든 통신연락선 완전 차단 조치’발표	6.9	
장금철, 통일전선부 부장 담화 *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	6.12	
김여정, 담화 *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될 것, 다음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군 총참모부에 넘겨주려 한다.”	6.13	
14시 50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파괴	6.16	통일부 차관, 현안 관련 브리핑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2018년 「판문점선언」의 위반이며...” 청와대 안보실 1차장, NSC 개최 결과 브리핑 *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김여정·장금철 통전부장 담화 및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문 발표 * “책임을 전가한 철면피한 궤변, 비굴함과 굴종”(김여정) * “앞으로 남측 당국과 무슨 교류, 협력 없다.”(장금철) * 4대군사행동계획 발표(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6.17	합참 작전부장, 현 상황 관련 브리핑 * “.....각종 군사계획을 비준 받았다고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통일부 차관, 현안 관련 브리핑 *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을 군사지역화 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 브리핑 * “...전례없는 비상식적 행위, 대북특사 파견 제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

북측	일자	남측
<p>통일전선부 대변인, '전단살포계획 불변'담화 * "우리의 계획을 고려하거나 변경할 의사는 전혀 없다."</p>	6.20	
<p>김정은 위원장,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5차회의 예비회의 진행 * 대남군사행동계획 보류 등</p>	6.23	
<p>김영철, 6.24 정경두 장관의 '대남군사행동 보류가 아닌 완전 철회'발언 관련 담화 * "우리의 '보류'가 '재고'가 될 때는 재미 없을 것"</p>	6.24	
<p>최설희 외무부상, 담화 * 미 내부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북미회담 가능성을 부정하면 서 남측의 중재의사를 비난, 미의 태도변화를 요구하며 대 미 압박</p>	7.4	
<p>권정근 미 국장 담화 * 미 고위당국자의 방한일에 맞춰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듭 일축하는 한편, 남측의 북미대화 '중재' 역할을 비난</p>	7.7	
<p>김여정, 담화 * 연내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북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의 획기적인 태도변 화를 촉구</p>	7.10	
<p>김정은 위원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확대회의 지도 * 군수사업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지적, 전쟁억제 력 강화하기 위한 핵심문제들을 토의하는 비공개회의도 개최</p>	7.18	
<p>김정은 위원장, 당 중앙위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긴급소집 * △개성시 봉쇄 및 비상사태 선포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 비상체제'로 이행 결정 △월남도주 발생 부대에 대 한 엄중 처벌 및 대책 강구</p>	7.25	
<p>김정은 위원장, 전승절(7.27) 계기 기념행사 주관 * △참전열사묘 방문·'백두산 기념 권총' 수여(7.26.)△전국 노병대회(7.27.) * 특히 전국노병대회 참가, 축하 연설 "핵억제력으로 국가 의 안전과 미래는 굳건하게 담보될 것" 등</p>	7.27	
	7.31	<p>통일부 장관,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및 제진역 방문 *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을 것이며 남북 철도·도로 연결도 추진하여 새로운 한반도 경제질서를 만들어 가겠다"</p>

북측	일자	남측
	8.15.	대통령 8.15 경축사 * “방역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란다.”
김정은 위원장, 당 중앙위 제7기 제6차 전원회의 주재 *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계획되었던 국가경제의 장성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 되지 못하는 결과” ** 8차 당대회 안건:△올해의 사업정형 △당 중앙위 사업총화 △내년 사업방향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등 언급	8.19.	
	9.23.	대통령, 유엔연설 *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
	9.24.	우리 어업지도원 사망 관련 NSC 상임위 성명 * △우리 국민 총격과 시신 훼손은 정당화 될 수 없음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함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9.25.	북측 통지문 관련 서훈 안보실장 브리핑 - 김정은 위원장, 서해 우리어업지도원 사망 관련 유감 표명 *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 대단히 미 안하게 생각함”
	9.25.	남북 정상 친서 관련 안보실장 브리핑 - 문재인 대통령 친서(9.8.) * 국무위원장의 생명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함. 매일이 위태로운 지금 서로 돕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국무위원장이 뜻하시는대로 모든 어려움 이 극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 김정은 위원장 친서(9.12.) * 이 기회를 통해 대통령과 남녘의 동포들에게 가식없는 진심을 전해 드림. 악성비루스, 태풍 피해 소식을 접하고 대통령의 노고를 생각, 끔찍한 올해의 시간이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차례로 기다릴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기다림
	9.27.	우리 어업지도원 사망에 대한 북측 통지문 관련 NSC 사무처장 브리핑 *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 △진상규명을 위해 공동조사를 요청 △군통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함

북측	일자	남측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게 코로나19 양성 판정 관련 위로전문 발송 * “하루 빨리 완쾌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10.3.	
당 창건 열병식 * (육성연설) △인민군 노력 치하 △대남 유화메시지 발송 등	10.10.	
	10.14 ~ 15.	한미, 제52차 안보협의회의 개최(워싱턴)
조중통, '서해상 우리 국민 사망사건'유감 표명(9.25.) 이후 한 달만에 입장 표명 * “불행한 사건을 초래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던 불쾌한 전례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	10.30.	
	11.4.	통일부 장관, 판문점견학지원센터 개소식 축하 * “남북통신복구, 공동연락사무소 복원, 이산가족상봉 복에 제안”
	11.6.	대통령 제주포럼 기조연설 * “남북의 결단과 다자협력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다자적 평화체제가 말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반드시 필요한 정신”
	11.9.	대통령 수보회의 말씀 * “우리는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개발한 무기 체계를 총정리한 화보집 발간	11.24.	

북한의 대남 침투·국지도발 일지

연대별 침투 및 국지도발 현황

2020년 11월 30일 기준

구분	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계	3,120	398	1,336	403	227	250
침투	2,002	379	1,009	310	167	94
국지도발	1,118	19	327	93	60	156

구분	2000년대	2010~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241	264	0	0	1
침투	16	27	0	0	0
국지도발	225	237	0	0	1

침투 및 국지도발 일지(2018. 12. 1. ~ 2020. 11. 30.)

일자	주요 내용
2020.5.3.	철원지역, 북한 GP에서 아군 GP로 총격(4발 피탄)

연대별·유형별 침투 및 국지도발 세부현황

2020년 11월 30일 기준

구분	계	1950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2017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계	3,120	398	1,336	403	227	250	241	264	0	0	1	
침투	직접 침투	1,749	375	988	298	38	50	0	0	0	0	
	간접 침투	214	0	0	0	127	44	16	27	0	0	
	월북· 남북자 남파	39	4	21	12	2	0	0	0	0	0	
	소계	2,002	379	1,009	310	167	94	16	27	0	0	
	지상 도발	503	7	298	51	44	48	42	12	0	0	1
국지 도발	해상 도발	559	2	22	27	12	107	180	209	0	0	0
	공중 도발	51	10	7	15	4	1	3	11	0	0	0
	전자전 도발	5	0	0	0	0	0	0	5	0	0	0
	소계	1,118	19	327	93	60	156	225	237	0	0	1

연합·합동연습 및 훈련 현황

한미 연합연습

연습명	형태	목적	내용
전·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CCPT)	지휘소 연습(C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연합방위체제 하 전구작전 지휘 및 전쟁수행절차 숙달 · 한미 연합작전 및 후방지역 방호작전 능력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관리 초기대응 · 전시전환 절차 숙달 · 작전계획 시행절차 숙달 · 연합작전지역내 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절차 숙달

*한미합의 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미래연합군사령부 운용능력 검증평가 병행

한국군 합동연습 및 훈련

연습명	형태	목적	내용
을지태극연습	전구급 지휘소연습 및 정부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 작전지휘능력 배양 ·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총무계획 및 전쟁수행예규 수행절차 숙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위기대응 지원 · 위기관리 절차 연습 · 전시전환 절차 연습
호국훈련	작전사급 야외기동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대비태세 확립 및 합동작전 수행 능력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지도발 및 전면전 관련 작계시행훈련 ·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작전수행 절차 적용 훈련
후방지역 종합훈련 (화랑훈련)	권역별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평시 작계시행 절차 숙달 · 지역주민 안보의식 고취 ·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테러작전 · 침투·국지도발 대비작전 · 전시전환 · 전면전 대비작전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019년 11월 15일, 서울

1.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2019년 11월 15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정경두 대
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Mark T. Esper) 미합중국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
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19년 11월 14일 대한민국 합
참의장 박한기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Mark A. Milley) 대장이 제44차 한미군사위원
회의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 유지의 핵심축으로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
였다. 양측은 SCM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한미동맹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다루어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
하며, 향후에도 SCM이 한미동맹 발전과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공약을 확인하는
중추적인 협의체로 지속 유지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표명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동맹의 미래 국방분
야 협력에 관한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연구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미래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
준이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검증 가능한 방식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19년 6월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미 회동 등 2018년과 2019년 개최된 남북미 정상간 회담의 역사적 성과를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과 '2018년 9월 평양공
동선언',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
된 공약들을 이행하는 데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행위들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였다. 아울
러, 양 장관은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4. 양 장관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 군사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
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 위험 감소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정 장
관은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지상·해상·공중 등 접경지역에서 상호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되었고,
JSA 비무장화 조치와 비무장지대 내 상호 GP 시범철수 등의 주요 조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노력이 지난 일 년 간 남북 접경지역에서 단 한 건의 군사적 긴장고조 행
위가 식별되지 않은 가운데, 접경지역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앞으로도
양 장관은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해나가기로 하였으며, '9·19 군사합의'

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포함한 조치를 통해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5. 양 장관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관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간 신뢰구축 조치 이행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정 장관은 대한민국이 정전협정과 유엔사의 권한 및 책임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존중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정 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이 그동안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고 평가하고, '9·19 군사합의'에서 합의한 완충구역이 우발적 충돌 방지는 물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이러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유엔사가 정전협정 이행과 신뢰구축 조치의 순조로운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하였다.
6.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에 기반한 대한민국 방위 및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확장억제 공동연구 결과를 통해 확장 핵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들을 도출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향후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면서, 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제고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6년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8. 양 장관은 금년 6월 3일 국방장관 회담시 승인한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 내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연합사 본부 이전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연합사 본부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본 이전이 연합방위지침과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의거하여 전작권 전환 이후 안정적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9. 양 장관은 조정된 방식의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현행 외교적 노력을 지원한 성과를 공유하였다. 또한 양측은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한 후호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조치 이행과 관련하여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

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지속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10. 양 장관은 공동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을 통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미래 안보환경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군의 국방역량을 확충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군의 국방개혁이 포괄적인 동맹능력 향상은 물론 한측 장성이 지휘하는 한미 양국의 굳건한 미래연합사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11.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제반 이행과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한측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 준비에 실질적인 성과와 진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공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2018년 서명한 '연합방위지침'을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금년 시행한 연합지휘소훈련이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평가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연합검증단의 평가 결과와 MCM 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후, 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 결과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2020년에 미래연합사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전략문서 발전 등 검증평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또한,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진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ecial PMC)가 핵심군사능력 평가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특별상설군사위원회 활동이 평가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정 장관은 미래 연합방위체제 지휘에 필요한 한국군의 방위역량 확충을 지속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의 지속능력 제공과 함께 대한민국이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정 장관은 방위역량을 조속히 확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현재와 같은 공고한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연례 SCM 및 MCM 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MCM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연합방위능력 향상, 관련 작전계획 및 내년 전반기 전략문서 발전 등의 진전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연합합동다목적 실사격훈련장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동의하였다.
14. 양 장관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위협에 대해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의 우주사령부 창설, 한국의 우주감시체계 구축 등 우주 역량 구축을 위한 양국 국방부의 노력

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동맹으로서의 우주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체계 등 협력방안을 더욱 모색하고, 우주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양자 및 다자간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새로운 우주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 능력을 갖춘 우주 전문인력 양성 협력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장관은 날로 증대되는 사이버 안보위험을 고려하여 동맹의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기로 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사이버 위협 동향 및 양국의 정책 변화 추이를 공유하고, 공동의 관심 현안을 협의하는 등 사이버 분야에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16. 양 장관은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과학기술협력이 확대되었음에 주목하고, 한미 공동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17.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역량을 강화할 필요성과, 국방력 건설과 획득, 그리고 운영과 관련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의 국방역량 및 상호운용성 강화에 중점을 둔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무기체계 획득, 그리고 군수 및 운영유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양측은 향후 위 분야를 지원하는 정례협의체를 통하여 협력을 모색하고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한미동맹의 정책 및 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기 협의체 개편을 승인하였다.
18.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대해적작전, 안정화 및 재건 노력,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등을 포함하여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국방협력을 지속 및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미국이 다양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는데 있어 글로벌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아덴만 해적퇴치활동, 유엔 평화유지활동, 확산방지구상(PSI) 등을 포함하여 글로벌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헌신과 기여를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WMD 확산 차단과 유사시 WMD 위협 대응을 위한 연합전력의 상호운용성 보장 및 대응능력 강화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미 국방부의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앞으로도 WMD 대응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9. 양 장관은 도전 요소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안보이익에 기초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정보공유, 인적교류활동을 포함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하였다.
20.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해 환경 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신속한 반환 추진이 필요한 네 개 기지 관련, SOFA 채널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점을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 도출을 위해 SOFA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서 관련 사항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또한 시설과 구역의 원상회복 책임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관련 정보 공개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21.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여건 보장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임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훈련장의 효과적인 공동 사용을 위해 민군 협의를 강화하고,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연합 실사격 훈련 여건을 보장하는데 있어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22. 에스퍼 장관은 방위 비용 부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비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향후 방위비분담금이 공평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23.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1차 SCM과 제44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상호보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2차 SCM과 제45차 MCM을 2020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1. 한미동맹은 지난 66년 간 양국의 정치, 사회 및 경제적 유대관계 심화에 기여해 왔으며, 양국의 공동 가치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동맹관계로 발전하였다.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 삼아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검증 가능한 방식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고 있다.
2. 한미 국방장관은 역동적인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제50차 SCM(2018.10.31.)에서 동맹의 국방협력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국방비전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한미 양 정상외 인식에서 비롯되었으며, 한미 양 정상은 2019년 6월 30일 정상회담에서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이라는 역내 협력 원칙에 따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3. 한미 국방협력은 한반도, 지역 및 세계 질서를 뒷받침하는 공동 원칙에 대한 공약으로부터 비롯되며, 이러한 공동 원칙은 아래의 요소를 포함한다.
 - 가. 한반도,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 추구
 - 나. 모든 국가의 주권과 독립 존중
 - 다. 국제적으로 확립된 법과 규범에 따른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
 - 라. 자유로운 접근, 항행과 비행을 포함한 국제 규칙과 규범 준수
4.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정착 이후에도 상기 공동 원칙을 바탕으로 양국 국방당국의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그리고 범세계적 공동의 국가안보이익을 보호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동맹의 국방협력은 한미 양국이 새로운 도전과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사이버, 우주, 해양, 그리고 환경문제와 같은 초국가적이고 비전통적인 새로운 위협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방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심화확대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공동의 가치와 원칙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 초국가 및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여 역내 파트너 역량 구축을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6. 동맹은 잠재적 핵, 화학, 생물 및 방사능(CBRN) 위협 예방 및 대응과 아울러, CBRN 능력과 투발 체계 및 관련물질 확산 예방과 같은 전통적인 영역에서도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는 확장억제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확장억제 강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동

맹은 사이버, 무인·자율 분야, 그리고 전략 물자·기술 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국방과학기술 협력 기회를 발굴해 나갈 것이다.

7.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그리고 세계의 안보, 안정 및 번영을 보장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020년 10월 14일, 워싱턴 DC

1.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2020년 10월 14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서 욱 대한
민국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Mark T. Esper) 미합중국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0년 10월 13일 대한민국 합참의
장 원인철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Mark A. Milley) 대장이 제45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의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SCM
이 국가적 차원의 공약을 논의하고 확인하는 중추적인 협의체로 지속 유지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양
측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
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연구에서 제시된 목표들을
지속 재공약함으로써 한미관계의 기반인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와 미래 국방협
력, 상호 신뢰 등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것임에 주목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북
한의 군사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안보에
제기하는 심각한 위협을 감안하여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
일 프로그램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
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 관련 합의사항 및 조
치들에 명시된 공약들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4. 서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남북 군사당국이 추진하고 있
는 다양한 조치들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 위험 감소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평
가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남북이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지상·해상·공중 등 접경지역에서의
적대행위 중지와 유엔사의 정전협정의 지속 이행 및 관리를 통해 안정성이 유지되고 우발적 충돌 가
능성이 현저히 감소되었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서 장관은 '9·19 군사합의'의 이행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축에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서 장관은 또한 '9·19 군사합의'를 통해 합의된 완충지역
이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
였다. 서 장관은 DMZ내 GP철수, 남북군사공동위 정례적 개최 등이 포함된 '9·19 군사합의'의 이행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현재의 안보 상황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 안보협의체의
항상 방안을 지속 모색하기로 결정하였다.

5. 양 장관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준수와 집행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67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그 임무와 과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서 장관은 북방한계선(NLL) 이 그동안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다. 또한 에스퍼 장관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유엔사가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을 이행하고 신뢰구축 조치를 실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서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안보리결의안에 의거 유엔사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6.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합의된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연합방위에 대한 양국 상호간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7년 이상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강조하였으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또한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동맹의 억제 태세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하기로 공약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확장억제 공동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많은 정책제언의 이행을 통해, 억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동 공약의 일환으로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향후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면서, 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제고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동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에이브람스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연합방위태세가 상시전투태세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안보 도전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요지의 MCM 결과를 보고받았다. 에스퍼 장관은 현재 연합사에 관련된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한반도 및 역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계획과 동맹 절차를 최신화하려는 연합사령관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8. 양 장관은 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지속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020년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조정된 방식으로 연중 균형되게 실시한 연합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계속해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9.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 여건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주한미군의 훈련을 목적으로 한측 시

설 및 공역의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공동사용을 위한 협조 과정에서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개발과 관련하여 계속 협력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설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1978년 창설된 이래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방어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에 사의를 표하면서, 연합사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 내 이전 추진현황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연합사 본부 이전이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고, 관련 부지들의 행정적·작전적 적합성이 갖춰지는 대로 연합사 본부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안전하고, 원활하며, 효율적인 이전을 수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11.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계획에 지정된 이행과업의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관련 진전에 주목하였으며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전시 작전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본 계획」 및 「2018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1호」를 완전히 준수할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올해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과 완전운용능력 평가를 위해 사용될 전략문서 공동초안이 마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8월 위기관리참모훈련 간 미래연합사의 기본 운용능력 검증평가를 완료하기 위한 동맹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에스퍼 장관은 2020년 말까지 2016 위기관리 합의각서를 최신화해야 할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12. 양 장관은 한미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음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2020년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관련 현안들에 대한 수차례 상설군사위원회가 개최된 점에 주목하고, 특별상설군사위원회의 활동이 전환조건 평가와 조건들에 대한 이해의 신뢰성을 높인 점에 공감하였다. 서 장관은 한국군이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본 계획」 및 「2018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 1호」가 명시한 방위역량 확충을 지속하는 가운데 동 계획의 목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동맹의 연합방위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보완 및 지속능력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전환조건 충족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보완능력의 제공을 공약하면서, 구체적 소요 능력 및 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서 장관은 대한민국의 경제·군사적 발전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이 해당 능력들을 획득, 개발, 및 제 공할 것임에 주목하였고 한측의 획득 계획에 대해 보다 더 활발히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 장관은 한반도의 방위에 필요한 한국군의 적절한 방위 역량을 획득할 대한민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측 능력의 발전에 연계하여 보완 및 지속능력을 최적화하는 공동연구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현재와 같은 굳건한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연례 SCM 및 M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위협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정보 및 우주 체계 등 핵심 기반체계를 발전시키고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 국방부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더 긴밀한 우주정책 발전을 조성해 나가자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양측은 동맹으로서의 우주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체계의 발전 등 협력방안을 더욱 모색하고, 동맹의 우주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양자 및 다자간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우주 전문인력을 양성할 기회 또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사이버 위협 동향 및 양국의 정책 변화 공유를 통해 사이버 영역 관련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고, 양국 상호이익에 대한 논의와 증진을 위해 사이버사령부 간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14. 양 장관은 국방 연구개발, 산업협력, 군사력 건설과 획득, 군수 그리고 기술보호 분야 등을 다루는 한미 협의체 간 교류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전력증강, 상호운용성, 획득, 운영유지 등 분야에서 동맹의 계획과 우선 현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동맹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시적이고 통합된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양자 협의체 개편을 신속히 추진하고 동 분야에 대한 목표와 과업들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장관은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과학기술협력이 확대되었음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협력이 한미 공동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16. 양 장관은 지역 및 세계의 복잡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폭넓은 글로벌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국방 및 안보 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한미 역내 전략의 시너지 모색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항행과 비행의 자유 등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와 국제 규칙 및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고, 이를 위해 더욱 협력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대해적 작전, 안정화 및 재건 노력,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등에 대한 공약도 재강조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이 코로나19 대응간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올해 초 개인보호 장비 제공 등 한국의 대미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이 세계적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서 장관은 역내 국가들에 제공해 온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19 지원과 주한미군사가 코로나19 방역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강력한 조치들에 주목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또한 확산방지구상(PSI) 등 글로벌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헌신과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대량살상무기(WMD) 확보 및 사용 방지, 필요시 WMD 위협을 경감시켜 동맹의 연합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한미 WMD 대응(CWMD)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WMD 대응역량을 증진시켜온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를 통해 앞으로도 협력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17. 양 장관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공유,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포함한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인적교류활동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18. 양 장관은 용산 기지 반환을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부지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해 환경 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측은 현 시점에서 17개 부지가 한국 정부로 반환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유관 현안을 한미 SOFA 공동위원회의 정립된 절차 속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19.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 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특히 협정 공백이 한미동맹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공평하고 공정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20. 서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2차 SCM과 제45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상호보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3차 SCM과 제46차 MCM을 2021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2018년 10월 31일

(목적) 2017년 양국정상이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한미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전문) 한미 국방부는 1953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 인식을 같이한다.

한미 국방부는 이러한 한미동맹의 기여가 향후에도 지속되어,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방지하고,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며,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임을 확인한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한미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된 이후에도 강화된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을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공약의 상징으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이행한다.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의 침략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방어하기 위해 한미 연합군사령부와 예하 연합구성군사령부를 편성한다.

연합군사령부는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운용되며, 양국 국가통수기구의 공동지침을 받는 군사협약기구로부터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는다.

대한민국 국가통수기구는 한국군 4성 장성을 연합군사령관으로 임명하며, 미합중국의 국가통수기구는 미군 4성 장성을 연합군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

한미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유엔군사령부를 지속 유지하고 지원하며, 한국 합참, 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간의 상호관계를 발전시킨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 발전시키고, 미합중국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보완 및 지속능력을 계속 제공한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외부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책임을 확대해 나가며, 미합중국 국방부는 확장억제를 지속 제공한다.

한미 국방부는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정기적인 협의를 진행한다.

한미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체제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노력한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

지속적 지원내역 : 약 2.9조 원

단위 : 억 원

구분	분류	세분	항목	2018년
직접지원	방위비분담금	인건비(3,710), 군사건설(4,442), 군수지원(1,450)		9,602
			미 통신선·연합 C4체계 사용	209
	국방예산 방위비분담금 외	카투사 병력지원(기본급, 피복비 등 운영 지원비)		192
			기지정비 및 이전 관련 비용	2,661
	국방예산 외 지원	부동산 지원		73
			기지 주변 정비 비용(주변 도로사업, 지역개발)	4,971
			직접지원 합계	17,708
간접지원	기회 비용	무상 공여토지 임대료 평가		8,919
			카투사 기회 비용	868
			훈련장 사용지원	278
	면제 및 감면 비용	관세, 내국세, 지방세, 석유 수입 및 판매 관련 세금 면제		1,215
			상하수도료, 전기료, 가스사용료, 전화통신료 감면	97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이용료 면제	92
			간접지원 합계	11,469
총계			29,177	

항목별 설명

구분	내용	관련 근거
미 통신선·연합 C4체계 사용비	미 통신선 사용료 및 연합 C4체계 지원비	한미연합사 통신비용부담합의서, 비용분담 및 정보보호운용성 체계에 관한 이행협정서
카투사 병력지원 (기본급, 피복비 등 운영 지원비)	카투사 병력에 대한 기본급·피복비 및 한국군지원단 운영비 지원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유엔군사령관 간 구두협약
기지정비 및 이전 관련 비용	반환기지 내 구 시설물 철거 및 환경정화비용,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용역 등	SOFA 2조·5조, SOFA 양해사항 2조·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 78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부동산 지원	시설부지·사용부지의 매입비, 사용료, 보상비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SOFA 2조·5조, SOFA 양해사항 2조·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8조 및 동법 시행령 40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2조
기지 주변 정비비용 (주변 도로사업, 지역개발)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비용 (주변 도로정비, 지역개발 지원비용)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SOFA 2조·3조·5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미군이전평택지원법
무상 공여토지 임대료 평가	주한미군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공여토지 및 건물의 임대료 기회 비용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SOFA 2조, 국유재산법 제 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카투사 기회 비용	카투사 병력이 미군일 경우를 가정 시, 미군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유엔군사령관 간 구두협약
훈련장 사용지원	주한미군 사격훈련장 이용 지원비용	SOFA 2조·5조, 우리 군 훈련장·사격장의 미군 이용에 관한 각종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
면제 및 감면 비용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을 면제 또는 감면	SOFA 6조·10조·14조·16조

국제 방산협력협정 체결 현황

국제 방산협력협정(양해각서) 체결국 : 39개국

2020년 12월 기준

상대국	체결년도	상대국	체결년도	상대국	체결년도	상대국	체결년도
미국	1988. 6.	태국	1991. 11.	스페인	1992. 3.	프랑스	1992. 3.
영국	1993. 9.	필리핀	1994. 5.	이스라엘	1995. 8.	인도네시아	1995. 10.
캐나다	1996. 5.	독일	1997. 11.	러시아	1997. 11.	루마니아	1997. 11.
네덜란드	1999. 6.	터키	1999. 12.	베네수엘라	1999. 12.	베트남	2001. 8.
우크라이나	2006. 12.	콜롬비아	2008. 5.	이집트	2009. 12.	에라도르	2010. 1.
페루	2010. 6.	UAE	2010. 9.	노르웨이	2010. 9.	덴마크	2011. 5.
폴란드	2014. 5.	칠레	2015. 8.	체코	2015. 8.	핀란드	2016. 6.
헝가리	2016. 7.	보츠와나	2017. 1.	에스토니아	2017. 2.	크로아티아	2017. 2.
사우디아라비아	2017. 9.	카자흐스탄	2017. 10.	아르헨티나	2019. 2.	우즈베키스탄	2019. 4.
뉴질랜드	2019. 5.	스웨덴	2019. 6.	파라과이	2019. 10.		

기타 방산협력 관련 협정(양해각서) 체결 현황

2020년 12월 기준

구분	국제기술협력·보호 협정(18개국)	품질보증 협정(24개국)	가격 정보 제공 협정(4개국)
국가	미국,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인도,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호주, 다자간* * 미국 등 14개국 다자간 체결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캐나다,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필리핀, 독일, 이스라엘, 터키, 뉴질랜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스웨덴, 페루, 노르웨이, 콜롬비아, 베트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국방협력협정 체결 현황¹⁾

2020년 11월 기준

상대국	체결연월	상대국	체결연월	상대국	체결연월	상대국	체결연월
독일	1994. 5.	요르단(조약)	2009.10.	필리핀	2013.10.	피지	2017. 1.
캐나다	1995. 5.	싱가포르	2009.12.	폴란드(조약)	2013.10.	이집트	2017. 3.
이스라엘	1995. 8.	리투아니아	2010. 2.	아제르바이잔	2013.12.	앙골라	2017. 3.
러시아	1996.11.	인도	2010. 9.	뉴질랜드	2014. 5.	미얀마	2017. 9.
터키	1999.11.	카자흐스탄	2010. 9.	카타르(조약)	2014.11.	캄보디아	2018. 9.
몽골	1999.12.	베트남	2010.10.	체코	2015. 2.	브루나이	2018. 9.
쿠웨이트	2004.11.	루마니아	2010.10.	콜롬비아	2015. 3.	이탈리아 (조약)	2018.10.
브라질(조약)	2006. 3.	가봉	2011.10.	불가리아	2015. 5.	칠레(조약)	2019. 4.
우크라이나	2006. 9.	페루	2011.10.	투르크메니스탄	2015. 5.	바레인	2019. 6.
UAE(조약)	2006.11.	호주	2011.12.	파라과이	2016. 1.	오만	2019.10.
스페인	2006.12.	태국	2012. 3.	에티오피아	2016. 5.	세네갈	2019.10.
우즈베키스탄	2008. 6.	중국	2012. 7.	우간다	2016. 5.	헝가리	2019.11.
일본	2009. 4.	사우디아라비아 (조약)	2013. 2.	에콰도르	2016. 7.		
스웨덴	2009. 7.	인도네시아 (조약)	2013.10.	보츠와나	2017. 1.		

1) 의의 : 상호 본격적 국방협력 추진을 위한 기본합의서 성격의 문서로서, 협력 원칙·분야·방식 등 포괄적 사항 규정
내용 : 협력 원칙(상호 호혜주의 등), 협력 범위(군사정보·군인사 교류, 방산, 군수 등), 행정사항(비용부담, 효력발생 등) 등

국제 군축 및 비확산 협약 및 기구

2020년 11월 기준

구분	가입국 (발효·설립)	남북한 가입현황	주요 내용	
유엔 관련 기구	유엔 총회 제1위원회 (First Committee)	193개국 (1945.10.)	한국(1991.9.) 북한(199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총회 6개 위원회 중 하나로 군축 및 국제안보 의제 논의 · 매년 50~60여 개의 결의안 초안을 총회에 권고하며, 대부분 본회의에서 그대로 채택
	유엔 군축위원회 (UNDC : UN Disarmament Commission)	193개국 (1952.1.)	한국(1991.9.) 북한(199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축·비확산 분야 주요 이슈 3개를 선정, 심층 검토하여 유엔 총회에 보고서 제출 · 주요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 방향, 원칙 등을 도출해 내는 심의기구
	제네바군축회의 (CD : Conference on Disarmament)	65개국 (1984.2.)	한국(1996.6.) 북한(199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군축을 담당하는 유일한 국제협상기구 · 군축 관련 주요 다자조약의 대부분이 군축회의에서 교섭을 통해 탄생 · 유엔 총회의 직속기구는 아니나 유엔 정규예산으로 운영되고, 독자적으로 의제 및 의사규칙 결정 · 매년 유엔 총회에 정기보고서 제출
핵무기	핵확산금지조약 (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191개국 (1970.3.)	한국(1975.4.) 북한(1985.12.) * 2003.1. 탈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무기의 확산 방지 및 핵군축 실현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국제원자력기구 (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172개국 (1957.7.)	한국(1957.8.) 북한(1974.9.) * 1994.6. 탈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기술 지원 · 핵물질의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방지
	포괄적핵실험 금지조약 (CTBT :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184개국 (미발효)	한국(1999.9.) 북한(미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체의 핵실험(대기권, 외기권, 수중 및 지하 포함) 금지
미사일 및 우주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규약 (HCoC :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143개국 (2002.11.)	한국(2002.11.) 북한(미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정치적·자발적 성격의 행동지침
	외기권평화적 이용위원회 (COPUOS :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95개국 (1959.12.)	한국(1994.9.) 북한(미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기권의 탐사 및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술적·법률적 문제의 기본원칙 제시
생물화학 무기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183개국 (1975.3.)	한국(1987.6.) 북한(198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무기(작용제 및 독소)의 개발, 생산, 비축 전면 금지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	193개국 (1997.4.)	한국(1997.4.) 북한(미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무기 개발, 생산, 비축, 사용, 이전 전면 금지 · 가입 후 10년 내 모든 화학무기·시설 폐기 · 불가피한 경우 5년까지 연장 가능

구분	가입국 (발효·설립)	남북한 가입현황	주요 내용	
생물화학 무기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193개국 (1997.4.)	한국(1997.4.) 북한(미가입)	· 화학무기금지협약 의무 이행 감시 및 사찰을 위한 집행기구
	무기거래조약 (ATT : The Arms Trade Treaty)	110개국 (2014.12.)	한국(2017.2.) 북한(미가입)	· 재래식무기의 불법거래 및 전용을 방지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보에 기여 · 재래식 무기의 국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규정
재래식무기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CCW :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125개국 (1983.12.)	한국1의정서 (2001.5.) (개정)2의정서 (2001.5.) 5의정서 (2008.1.) 북한(미가입)	· 정식명칭 : 과도한 상해나 무차별한 영향을 초래하는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 - 제1의정서 : X-ray로 탐지 불가한 파편무기 사용 금지 - 제2의정서 : 지뢰, 부비트랩 등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 제3의정서 : 화염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 - 제4의정서 : 실명 레이저무기 사용 금지 - 제5의정서 : 전쟁잔류폭발물 규제
	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 (UNRCA : United Nations Register of Conventional Arms)	193개국 (1991.12.)	한국(1993.3.) 북한(미참여)	· 재래식무기 수출입 실적 및 보유현황 등을 유엔에 등록 · 재래식무기 이전 정보 공유 및 군비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뢰 증진
	대인지뢰금지협약 (Ottawa Convention)	164개국 (1999.3.)	남·북한 미가입	· 대인지뢰의 생산, 사용, 비축, 수출 전면금지 · 대인지뢰 폐기(비축분 4년 이내, 매설분 10년 이내) *불가피한 경우 10년까지 연장 가능
	확산탄금지협약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110개국 (2010.8.)	남·북한 미가입	· 모든 확산탄의 생산, 사용, 비축, 이전 전면 금지 *현재 비축 확산탄은 8년 내 폐기
	쟁거위원회 (ZC : Zangger Committee)	39개국 (1974.8.)	한국(1995.10.) 북한(미가입)	· NPT 미가입 핵비보유국에 대한 핵 관련 물자 수출시 IAEA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출 · NPT 회원국만 가입 가능
	핵공급국그룹 (NSG : Nuclear Suppliers Group)	48개국 (1978.1.)	한국(1995.10.) 북한(미가입)	· 핵물질, 기술, 장비,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 NPT 회원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핵비보유국에 대해 수출 통제
다자수출 통제체제	호주그룹 (AG : Australia Group)	43개국 (1985.6.)	한국(1996.10.) 북한(미가입)	· 화학·생물무기 관련 물질,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등이 우려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통제체제
	미사일기술 통제체제 (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35개국 (1987.4.)	한국(2001.3.) 북한(미가입)	·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 무인비행체, 그리고 관련 장비·기술의 확산을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체제
	바세나르체제 (WA : Wassenaar Arrangement)	42개국 (1996.7.)	한국(1996.7.) 북한(미가입)	· 재래식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에 관한 수출통제 체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확산방지구상 (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s)	107개국 (2003.6.)	한국(2009.5.)	· 불량국가 및 테러집단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및 관련물자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 활동

우리 군의 해외파병 현황

총 14개 지역 1,038명

2020년 11월 기준

구분	현재 인원	지역	최초 파병	교대주기				
유엔 임무단	부대단위	레바논 동명부대	280	티르	2007년 7월	8개월		
		남수단 한빛부대	270	보르	2013년 3월			
	개인단위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UNMOGIP)	8	스리나가	1994년 11월	1년	
			남수단 임무단(UNMISS)	7	주바	2011년 7월		
			수단 다푸르 임무단(UNAMID)	1	다푸르	2009년 6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4	나쿠라	2007년 1월		
			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MINURSO)	3	라운	2009년 7월		
	예멘 협정지원임무단(UNMHA)	-	호테이다	2019년 7월				
	소계	573						
다국적군 평화활동	부대단위	소말리아해역 청해부대	306	소말리아해역	2009년 3월	6개월		
		바레인 연합해군사령부	참모장교	4	마나마	2008년 1월		
	개인단위		지부티 아프리카사령부 연합합동기동부대 (CJTF-HOA)	협조장교	1	지부티	2009년 3월	1년
			미국 중부사령부	협조단	3	플로리다	2001년 11월	1년
			미국 아프리카사령부	협조장교	1	슈투트가르트	2016년 3월	1년
			쿠웨이트	협조장교	2	아라프잔	2019년 12월	1년
			EU 소말리아 해군사령부 (CTF-465)	참모장교	1	소말리아해역	2020년 3월	1년
	소계	318						
국방협력	부대단위	UAE 아크부대	147	아부다비	2011년 1월	8개월		
	소계	147						
총계		1,038						

* 예멘 협정지원임무단 : 코로나19로 2021년 재개 예정

병사 봉급 변화 추이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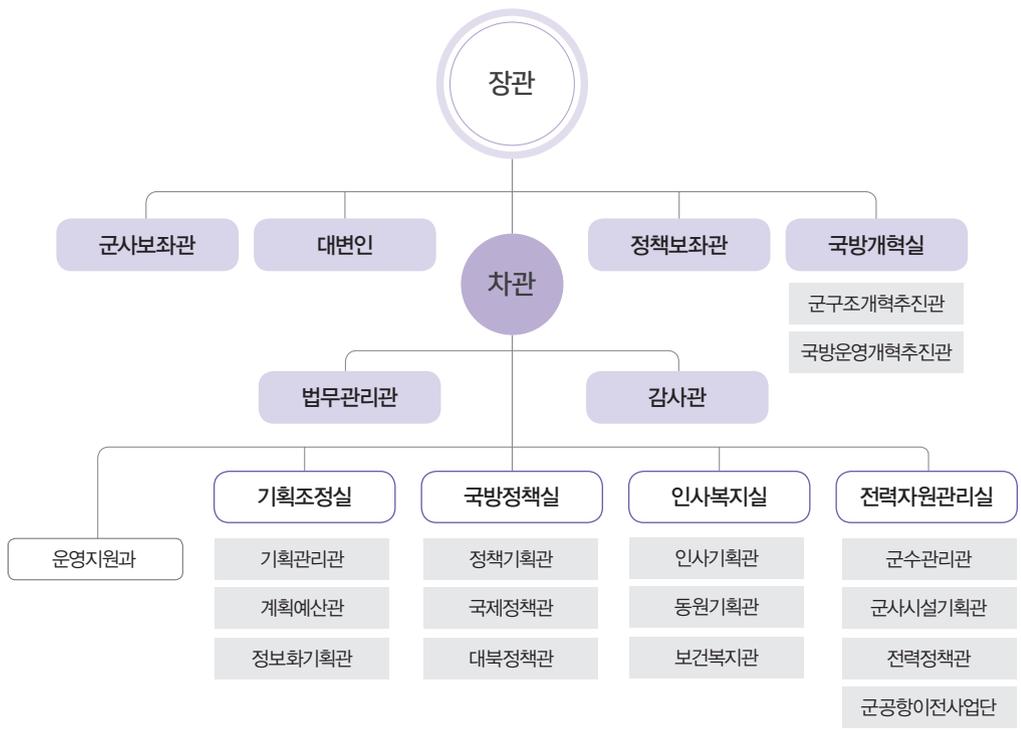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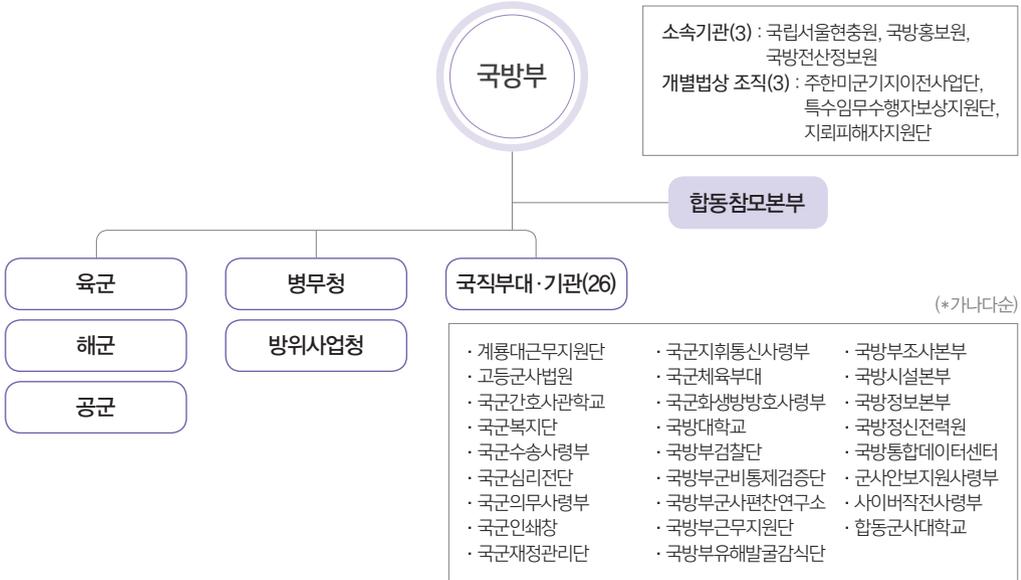
연도	병장	상병	일병	이병	연도	병장	상병	일병	이병
1970년	900	800	700	600	2002년	21,900	19,800	17,900	16,500
1971년	1,030	920	800	690	2003년	23,100	20,900	18,900	17,400
1972년	1,200	1,050	900	800	2004년	34,000	30,700	27,800	25,600
1973년	동결				2005년	44,200	39,900	36,100	33,300
1974년	1,560	1,370	1,170	1,040	2006년	72,000	65,000	58,800	54,300
1975년	동결				2007년	88,600	80,000	72,300	66,800
1976년	2,260	1,990	1,700	1,510	2008년	97,500	88,000	79,500	73,500
1977년	2,890	2,540	2,170	1,930	2009년	동결			
1978년	3,460	3,050	2,600	2,320	2010년	동결			
1979년	3,800	3,300	2,900	2,600	2011년	103,800	93,700	84,700	78,300
1980년	3,900	3,400	3,000	2,700	2012년	108,000	97,500	88,200	81,500
1981년	동결				2013년	129,600	117,000	105,800	97,800
1982년	4,200	3,700	3,300	3,000	2014년	149,000	134,600	121,700	112,500
1983년	4,500	3,900	3,500	3,200	2015년	171,400	154,800	140,000	129,400
1984년	동결				2016년	197,000	178,000	161,000	148,800
1985년	4,600	4,000	3,600	3,300	2017년	216,000	195,000	176,400	163,000
1986년	4,900	4,300	3,900	3,500	2018년	405,700	366,200	331,300	306,100
1987년	5,100	4,500	4,000	3,600	2019년	동결			
1988년	7,500	6,500	6,000	5,500	2020년	540,900	488,200	441,700	408,100
1989년	8,300	7,000	6,500	6,000					
1990년	9,400	8,200	7,300	6,600					
1991년	10,000	9,000	8,000	7,200					
1992년	10,900	9,800	8,700	7,800					
1993년	11,300	10,100	9,000	8,100					
1994년	11,700	10,400	9,300	8,400					
1995년	12,100	10,700	9,600	8,700					
1996년	12,700	11,200	10,100	9,100					
1997년	13,300	11,800	10,600	9,600					
1998년	동결								
1999년	동결								
2000년	13,700	12,200	10,900	9,900					
2001년	19,600	17,700	16,000	14,800					

* 출처 : - 1983년~2020년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 1970년~1982년 군인보수법시행령(대통령령) 별표 2 병의 봉급표

현역병 복무기간 변천

연도	복무기간(개월)			조정사유
	육군·해병	해군	공군	
1952년 이전	전역제도 없음			6·25전쟁 발발로 「병역법」의 정상적 시행 불가
1953년	36	36	36	6·25전쟁 후 장기복무자 전역 조치
1959년	33	36	36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1962년	30	36	36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1968년	36	39	39	1·21사태로 복무기간 연장
1977년	33	39	39	잉여자원 해소 및 산업기술 인력 지원
1979년	33	35	35	해·공군병 획득난 해소
1984년	30	35	35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1990년	30	32	35	해군병 획득난 해소
1993년	26	30	30	방위병제도 폐지로 인한 잉여자원 해소
1994년	26	28	30	해군병 획득난 해소
2003년	24	26	28	병역부담 완화
2004년	24	26	27	공군병 획득난 해소
2008년	24 → 18	26 → 20	27 → 21	병역부담 완화를 위해 6개월 단축 추진 (2014년까지 단계적 추진)
2011년	21	23	24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기존 6개월 단축을 3개월 단축으로 조정
2018년	21 → 18	23 → 20	24 → 22	병력중심의 군을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고,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국방개혁 2.0」)
2020년	18	20	22 → 21	「국방개혁 2.0」 후속조치

국방기구도



소속기관 및 개별법상 조직의 임무 및 기능

구분	임무 및 기능
국립서울현충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장·위패봉안·추모식 등 위령행사 실시 · 참배행사 계획 수립 및 시행 · 현충선양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립서울현충원 홍보 · 국립서울현충원 시설·묘역산림의 관리 및 운영
소속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일보, 국방TV 및 국방FM, 국방누리(뉴미디어)등을 통한 군 홍보 및 장병교육 · 국방뉴스, 시사보도물 제작 및 사이버 홍보 · 국방관련 행사 사진촬영 및 기록 관리 등
국방전산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자원관리 정보체계 개발 및 유지보수 · 국방부분부·소속기관 및 일부 국직부대(기관)의 전산장비 획득·운영 · 국방부분부·소속기관 및 일부 국직부대(기관)의 사무용 전산기기/SW 획득·운영 및 지원 · 정보화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집행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관리운영의 지원 · 그 밖에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한 업무 등
개별법상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준비 및 지원 ·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신청인에 대한 자료 확인 및 조사 · 법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소송 및 민원 대응 등
지뢰피해자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지원 심의회, 피해자 및 유족여부심사 실무위원회, 장애등급판정 실무위원회 심의 준비 및 지원 · 위로금 등의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신청인에 대한 자료 확인 및 조사 · 그 밖에 지뢰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 및 민원 대응 등

공공기관의 임무 및 기능

구분	임무 및 기능
한국국방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보환경 및 국방기본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무기체계의 선정 및 획득정책에 관한 연구 · 국방인력·자원관리 및 국방과학기술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 국방정보화 정책연구, 국방정보화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기술자문 · 국방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등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기념관 및 기념탑 운영 · 전쟁 및 군사유물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연구 · 전쟁사 및 군사유물 연구, 호국인물 발굴 및 현양 및 기타 학예활동 ·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와 교육 및 각종 관련 간행물의 작성·배부 등
국방전직교육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역예정군인 전직관련 교육 및 취업역량 제고 · 전역예정군인 취업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촉진 · 전역예정군인 취업희망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통계 유지·분석 · 전역예정군인 전직지원 관련 정책 및 제도발전 연구 등

국방부 소관 법령 정비 현황

법령정비 현황(2018. 12. 1. ~ 2020. 11. 30.)

합계	법률	대통령령	부령
157	43	66	48

법률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제15983호 (2018.12.18.)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하는 등 「형사소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제16029호 (2018.12.24.)	·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국방부 장관이 업무수행을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및 가족관계등록 사항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제16030호 (2018.12.24.)	· 시행규칙에서 모법의 위임 없이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이 조건을 정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법률에 명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제16031호 (2018.12.24.)	· 현행법의 '잔임기간'이라는 한자어를 '남은 임기'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률의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 제16032호 (2018.12.24.)	· 전세대부계정의 명칭을 주거지원 계정으로 변경하고, 전세금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주거지원계정의 용도에 추가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제16033호 (2018.12.24.)	· 민간주택전세금 대부 외에도 군인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금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을 대한 이자 등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제16034호 (2018.12.24.)	· 모든 군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거나 참여를 제한받지 않도록 하고 군 내 기본권 침해 등 고충사항의 발생 시 신속히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군인사법	일부개정 제16224호 (2019.1.15.)	· 군인의 결격사유 중 성폭력범죄 부분을 강화, 군인의 성범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간부후보생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며, 군인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무원과 근무여건상의 균형을 도모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제16315호 (2019.4.16.)	·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과 예비역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통해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제16346호 (2019.4.23.)	· 6·25전쟁 당시 전장에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무공훈장이 수여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6347호 (2019.4.23.)	·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사항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병역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를 추가하려는 것임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제16348호 (2019.4.23.)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인 간호학사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하게 구성되도록 의무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6349호 (2019.4.23.)	· 국군포로의 송환에 참여한 사람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한 벌금형을 현실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6350호 (2019.4.23.)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실태조사 결과 국가가 국방·군사시설로서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등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공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6351호 (2019.4.23.)	· 군에서 실시한 예방접종 이력이 통합관리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예방접종 실시내역 등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질병관리본부와 공유하도록 규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제16352호 (2019.4.23.)	· 군사시설의 정의에 군사목적에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시험장을 명시 ·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반환 공여구역은 반환이 완료된 때에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6353호 (2019.4.23.)	· 연구·시험·수출·홍보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군용항공기에 관한 감항 인증 절차 마련 ·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감항 인증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
군인사법	일부개정 제16354호 (2019.4.23.)	· 해병대사령관의 임기가 끝난 후에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않고 연합작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문성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제16355호 (2019.4.23.)	·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료 순직이 인정된 경우 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 퇴직수당 및 사망조위금의 시효의 기산일을 순직 결정일로 하도록 함으로써, 순직한 사람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
병역법	일부개정 제16356호 (2019.4.23.)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공직자 등에 대한 병적 관리를 강화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제16357호 (2019.4.23.)	· 육군3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인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하게 구성되도록 의무 규정을 명시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제16358호 (2019.4.23.)	·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에 대하여도 그 유족으로부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동안 진급신청을 받아 진급시킬 수 있도록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제16359호 (2019.4.23.)	· 위로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2021년 5월 31일까지 연장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6360호 (2019.4.23.)	· 보상금 등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 연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제16577호 (2019.11.12.)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제16582호 (2019.11.26.)	·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방지 및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6583호 (2019.11.26.)	·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증명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제16584호 (2019.11.26.)	· 군대 내에서 기본권 교육 강화 ·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규정
예비군법	일부개정 제16585호 (2019.11.26.)	· 국방부 장관은 예비군훈련 시 미세먼지가 대기오염경보 발령기준 이상일 경우 실내훈련,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제16759호 (2019.12.10.)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구성을 마치면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기한을 연장
군인연금법	전부개정 제16760호 (2019.12.10.)	·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 제16761호 (2019.12.10.)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
병역법	일부개정 제16852호 (2019.12.31.)	· 대체역을 신설하고, 대체역과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 간 병역의무 형평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제16851호 (2019.12.31.)	·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으로의 편입·심사 및 대체역의 복무 등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제16926호 (2020.2.4.)	· 헌법의 수행 임무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인 군사경찰로의 변경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6927호 (2020.2.4.)	· 병(兵)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병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영창(營倉)을 폐지하되,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징계의 종류에 군기교육, 감봉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정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제16929호 (2020.2.4.)	·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이 법을 제정하고,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 제17163호 (2020. 3. 31.)	· 제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기술발전 속도의 가속화됨에 따라 국방과학기술분야에서도 혁신 및 발전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른 연구개발은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수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국방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체계는 부족한 실정인바,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국방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 조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제17164호 (2020. 3. 31.)	· 비행안전구역 제1구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수종말처리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물 및 그 부속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관할부대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제17165호 (2020. 3. 31.)	·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방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연구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면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내용을 삭제·수정
병역법	일부개정 제17166호 (2020. 3. 31.)	·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하고, 해운업체 등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며, 승선근무예비역의 권리 보호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운업체 등의 장에게 약정 근로조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제17266호 (2020. 5.19)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의 타결이 지연되면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위와 생활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였음. 이에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생계위협 및 생활 상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제17367호 (2020. 6. 9.)	· 군인·군무원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의 불복절차인 재정신청 제기 기간을 그 처분을 통지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군 형사소송절차에서 군 장병의 인권보장을 강화 하는 동시에 최근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

대통령령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작전사령부령	일부개정 제29321호 (2018.12.4.)	· 종전에 「야전군사령부령」에 따라 두고 있던 제1군사령부 및 제3군사령부를 통합하여 군단 단위의 지상작전부대를 지휘하는 지상작전사령부로 개편하기 위한 규정 개정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 제29322호 (2018.12.4.)	· 국방지형정보단을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정보사령부에서 통합 수행하기 위한 개정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9373호 (2018.12.18.)	·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도 6개월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9399호 (2018.12.24.)	·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도 통합방위협의회의 및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의 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개선을 위한 개정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29400호 (2018.12.24.)	· 「작전사령부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육군 본부 보통군사법원 2부 및 4부의 소재지를 변경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9496호 (2019.1.22.)	· 육군·해군·공군 본부 등 소요제기기관이 무기체계 등에 관하여 객관적·합리적인 소요제기를 하도록 소요제기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전력소요서 안에 포함되는 사항과 동일하게 하는 등 규정 개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9497호 (2019.1.22.)	· 국방부 장관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군보건의료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 실적에 따라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업무보조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진료업무보조비를 환수하는 근거를 마련
사이버작전사령부령	전부개정 제29561호 (2019.2.26.)	· 국방부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이버작전 시행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사이버작전사령부령」으로 전부개정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9637호 (2019.3.25.)	· 국방부 장관이 사실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병역 정보 등으로 정함. ·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제29640호 (2019.3.26.)	· 국방부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군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
6·25 전자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9672호 (2019.4.2.)	· 본인의 유전자 시료(試料)를 제공하여 6·25전쟁 중의 전자자유해의 신원확인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1천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포상금 지급대상을 추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제29734호 (2019.5.7.)	· 국방 분야 양성평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1명)을 증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9747호 (2019.5.7.)	· 국방부 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한 환영식 및 퇴역식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 장관이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신청을 받아 억류기간 중의 억류국 등에서의 동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예우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 제29790호 (2019.5.28.)	· 군위탁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 제29819호 (2019.6.11.)	· 작전부대와 합동부대에 대한 전투준비태세 검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특별참모부로 전비태세검열실을 신설하려는 것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9893호 (2019.6.25.)	· 관할부대장 등의 동의를 기존 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부대방향 창문 설치 금지 등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전쟁장비·물자의 생산·저장시설 등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9894호 (2019.6.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없어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각 군별 기본병과 명칭 중 화학과를 화생방과로 변경하는 등 현재 수행하는 병과의 임무를 명칭에 명확히 반영하는 등 규정 개정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9937호 (2019.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정군무원 또는 일반계약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군무원에 관하여 근속승진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 경력 전부를 산입하도록 함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29993호 (2019.7.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로자 또는 유가족의 등록 신청 방법 및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의 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제29994호 (2019.7.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족이 진급을 신청할 때에는 진급신청서에 가족 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방부 장관은 진급신청이 접수되면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진급신청을 한 대상자가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보고하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 제30022호 (2019.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행정을 한 군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징계 등 심의대상자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때에는 징계 등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제30041호 (2019.8.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 군수관리관을 앞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
군예식령	일부개정 제30064호 (20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국민의 경우에는 관악 연주 없이 예약만 연주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경우에는 예포 발사가 없는 행사에 한정하여 관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례곡 연주시간을 단축하는 등 규정 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0065호 (20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인은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월 이내의 범위에서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兵)에게 의무복무기간 중 2일의 범위에서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등 구직활동을 위한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0066호 (20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 그 사람에게 대하여 도주 등에 따른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명수배·통보가 해제될 때까지 퇴역연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정지하는 등 규정 개정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 제30067호 (20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병대사령부의 효율적인 정책기능 수행을 위하여 전력기획실의 정책업무를 이관하여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위한 규정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0090호 (2019.9.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중 방위사업의 추진단계별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책·기획분과위원회, 사업관리분과위원회 및 군수조달분과위원회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로 통합 · 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20명 이내에서 26명 이내로 확대
국군체육부대령	일부개정 제30121호 (2019.1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군체육부대 부대장의 직급을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에서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조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30122호 (2019.10.15.)	· 「군인복지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30135호 (2019.10.22.)	· 국방부가 보유한 군인 등의 예방접종 이력을 국방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예방접종일부부터 14일 이내에 전송하여 공유하도록 함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30136호 (2019.10.22.)	· 국방부 장관은 매 짝수연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하는 등 실태조사와 공고의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30137호 (2019.10.22.)	·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의 범위를 무인 항공기, 동력패러슈트 및 동력패러글라이더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30162호 (2019.10.29.)	· 병무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병역 변동사항에도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를 추가 · 병무청장이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각 군 참모총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30185호 (2019.11.5.)	·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범위를 조정하고, 군 책임운영기관의 상여금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을 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0199호 (2019.11.5.)	· 적극행정 수행 태도 등이 돋보인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각각 6개월을 가산하고 그 기간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 개정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30213호 (2019.11.26.)	· 2급 이상 군무원이 지휘하는 부대에도 군 미결수용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0225호 (2019.12.3.)	· 현재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동일한 서류를 중복 제출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이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군수 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 신고 관련 과세자료에 대해 세무조사 등을 한 경우 그 조사 결과 중 과세자료와 내용이 다른 사항이 있으면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 제30269호 (2019.12.24.)	· 군인명예전역수당을 신청한 후 사망한 군인도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 심사·결정 대상에 포함하여 군인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 군인명예전역수당을 받은 사람을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는 재임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군인명예전역수당 환수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군인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각 군 참모총장에게 환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 개정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0279호 (2019.12.3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 장애로 인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제30281호 (2019.12.31.)	· 국방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장성급 장교로 보하던 국방부 정보기획관 및 동원기획관을 앞으로는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인력증원에 관한 사항 규정 · 국방정책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2년 연장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0312호 (2019.12.31.)	·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군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확대하려는 것임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0323호 (2020.1.7.)	· 입영신체검사 후 질병 등의 사유로 구가된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재신체검사 대기 기간을 일부 단축하고, 병역판정검사 없이 병역면제되거나 전사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병역처분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 개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제30364호 (2020.1.29.)	·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군하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1월 30일에서 2022년 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0384호 (2020.2.4.)	· 군인의 기본병과 중 하나인 헌병과를 군사경찰과로 하고, 해병대 정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 제30385호 (2020.2.4.)	· 재외공관에 두는 무관(武官)의 정원을 75명에서 77명으로 2명(육군 및 공군 영관급 장교 각 1명) 증원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제30452호 (2020.2.25.)	· 국방부에 청년장병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등 인력 증원관련 규정 개정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0553호 (2020.3.31.)	· 중증장애인의 군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는 일반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일반군무원의 정보통신 직군에 사이버직렬을 신설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0554호 (2020.3.31.)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저장 관련 안전사고 관련 별도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기존에 수출 허가를 받은 것과 동일한 방위산업물자를 동일한 사용자에게 재수출하는 경우 등에는 수출 허가를 면제 하는 등의 규정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제30635호 (2020.4.28.)	· 국방부 인사복지실 및 전력자원관리실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 전력자원관리실의 분장 사무에 군 안전관리 정책 수립 업무를 추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0695호 (2020.5.26.)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기준과 실내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및 군기훈련의 목적, 방법 및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 제30759호 (2020.6.9.)	·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군인연금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분할연금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의 인정기준 및 분할연금의 청구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 제30760호 (2020.6.9.)	· 「군인 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분할연금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제30767호 (2020.6.9.)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병무청에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을 증원하며, 병무청에 대체역 심사위원회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하고,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무청 정원 2명을 병무청 소속기관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30807호 (2020.6.30.)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 절차,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사람의 징집·소집 연기절차를 마련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대체역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0814호 (2020.7.1.)	· 방위사업청장의 방위력개선사업 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군수품 조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 중 전력지원체계 일부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조달하는 근거를 마련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 제30880호 (2020.7.28.)	·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0881호 (2020.7.28.)	·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군무원징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1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군무원징계위원회 및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0891호 (2020.8.4.)	· 군인사법의 개정에 따라 법률로 상향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전상자 등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제30945호 (2020.8.19.)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지원금의 구체적인 선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 제30963호 (2020.8.25.)	· 각 군의 특성에 따른 전문화된 교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합동군사대학교에 두고 있던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이를 각 군에 두려는 것임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1058호 (2020.9.29.)	·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 사항에 인권침해 발생여부를 추가하고, 해운업체 등의 장이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때에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첨부하게 함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1092호 (2020.10.7.)	· 지역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중 기존 지방병무관서의 장을 기관의 편성이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및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특정하고,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방호를 위해 관할지역 구분없이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 지역책임 부대장 및 경찰서장이 공동으로 경계협정서를 체결하도록 함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31122호 (2020.10.27.)	· 상근 예비역 또는 현역병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어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 등을 받은 경우 국방부 장관이 그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가입 및 해지 등의 업무를 군인공제회에 위탁하는 한편 해당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병무청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1123호 (2020.10.27.)	· 「군인 재해보상법」의 제정에 따른 준용근거 법률 및 조문을 정비하고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장해보상금 및 사망보상금의 지급기준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통일함에 따라 예비군도 군인과 동일한 지급기준을 적용함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예비군에 대한 보상을 강화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 제31124호 (2020.10.27.)	·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부대구조 개편 등 급변하는 국방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국방부 장관이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하고 있는 일반군무원의 직군·직렬조정권한의 위임범위를 6급 이하 일반군무원에서 전 계급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 제31173호 (2020.11.24.)	·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의 지정·고시등에 필요한 사항 소음피해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을 정함

부령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74호 (2018.12.14.)	·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방부에 인력 증원
군인 등의 특수군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976호 (2019.1.24.)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위험 군무수당 지급대상에 항공생리훈련교관을 추가하는 등 규정 개정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 제977호 (2019.1.31.)	· 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4년제 대학 4학년 때만 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관후보생 선발 및 대학 졸업 시기를 고려하여 그 학생의 동기가 있으면 사관후보생과정을 시작하기 전까지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78호 (2019.2.27.)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확대,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간근로역 편입 신청 시 지방병무청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서류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추가하는 등 규정 개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80호 (2019.3.5.)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철도·도로·교량 및 하천에 관한 공익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폭발물 관련 군사 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해야 하는데, 그 사항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폐쇄되는 도로를 대신하여 기존 차로의 수 이하인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경우를 새로 추가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81호 (2019.3.5.)	· 국방부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83호 (2019.4.26.)	· 장교 진급제도와외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사관 진급선발 대상자 제외 사유를 삭제하고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를 신설하는 등 부사관 진급제도를 개선하는 등 규정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84호 (2019.5.7.)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9734호, 2019. 5. 7.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정하는 한편, 전직지원정책과 및 국방여성가족정책과의 명칭을 각각 국방일자리정책과 및 양성평등정책과로 변경하는 등 규정 개정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85호 (2019.5.30.)	· 「군위탁생규정」으로 상향하여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매 학기 보고하는 군위탁생의 현황을 국방부 장관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위탁생 교육계획서 승인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정개정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86호 (2019.6.25.)	·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행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정 개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87호 (2019.7.8.)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는 경우 조건부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규정 개정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88호 (2019.8.6.)	·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를 위하여 징계 등 의결서에 면제 사유 해당 여부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하는 등 관련 내용 개정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89호 (2019.8.6.)	·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를 위하여 징계등 의결서에 면제 사유 해당 여부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90호 (2019.8.13.)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0041호, 2019. 8. 13.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91호 (2019.8.27.)	·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계적으로 단축됨에 따라 일등병, 상등병 및 병장으로 진급하기 위한 최저복무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하고,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93호 (2019.9.3.)	·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180호, 2019. 9. 3. 공포·시행)됨에 따라, 외국거주자 산상신고서 및 급여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퇴직급여 청구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95호 (2019.9.24.)	· 「방위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090호, 2019. 9. 24. 공포·시행)됨에 따라, 핵심기술기획서를 심의하는 분과위원회를 정책·기획분과위원회에서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로 변경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996호 (2019.9.26.)	· 종전에는 예비군 육성·지원 요청서의 제출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조례 위임 규정을 삭제함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 제997호 (2019.10.11.)	· 협력업체의 지급보증서 등에 명시된 보증금액 또는 보험금액만큼 조선업체의 지급보증서 등의 제출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특례의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98호 (2019.10.18.)	· 장기복무 부사관 선발 및 부사관 진급 대상자 선발 시 부여하는 가점과 관련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일정한 범위에서 각 군의 인력 획득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회전익항공기 조종사를 준사관으로 임용할 때 임용기준을 비행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 하여 명확성을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규정 개정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99호 (2019.10.24.)	· 군용항공기 중 무인항공기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을 신청하려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 운용 목적 및 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감항인증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규정 개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00호 (2019.10.29.)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01호 (2019.12.4.)	· 「방위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보안서약서 서식을 삭제하는 등의 규정 개정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 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1002호 (2019.12.30.)	· 방위산업체에 적정 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윤산정기준을 개선하고, 방산노임단가와 기준노무량 개념을 도입하는 등의 규정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04호 (2019.12.31.)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0281호, 2019.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등 규정 개정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06호 (2020.1.7.)	· 장애등급제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령의 개정에 따라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대상 장애인 중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한 사람의 기준을 정비하는 등 규정 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08호 (2020.1.23.)	· 부사관 진급 선발기준 중 나이를 삭제하여 나이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고, 심신장애인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심신장애 치유 가능성, 병과 특성에 따른 복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육군, 해군 및 공군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09호 (2020.1.29.)	·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군항공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고, 기존 한시정원 중 1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11호 (2020.2.17.)	· 일반군무원의 신규 채용시험 중 면접시험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접시험의 평정요소별 점수를 세분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13호 (2020.2.25.)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14호 (2020.3.31.)	·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등이 수립해야 하는 위해 예방규정의 기준 등을 정하고, 수출허가를 면제받고 방위산업물자 등을 수출한 자가 수출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수출거래 현황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함
군인 등의 특수군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1015호 (2020.4.2.)	·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장성급 장교인 조종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월지급액을 정함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17호 (2020.4.28.)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0635호, 2020. 4.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및 부서 명칭을 조정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18호 (2020.5.27.)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병역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함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19호 (2020.6.1.)	·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부사관을 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특별전형을 마련하는 등 인사제도 운영을 개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20호 (2020.6.2.)	· 국방기술품질원장이 방산업체로부터 인증경신의 신청을 받고,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현장심사를 갈음하여 제출한 자료 등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제1022호 (2020.6.11.)	· 분할연금 산정 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신고절차 등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정 제1023호 (2020.6.11.)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 규칙	일부개정 제1024호 (2020.6.19.)	· 학생군사교육단 설치기준 인원을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은 40명으로, 부사관후보생은 30명으로 변경하고, 병적 전환 근거를 마련함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제1026호 (2020.6.30.)	· 대체역 편입신청서의 서식을 정하고, 편입신청서 제출 시 본인 진술서 및 부모·주변인 진술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게 함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27호 (2020.6.30.)	· 병역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병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대상에 대체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조문과 서식을 정비함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 제1028호 (2020.7.15.)	· 예비군부대 지휘관 및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운영을 위한 지휘관과 이를 보좌하는 인력 선발의 응시자격에 육군 인사와 지휘관 직위경력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선발시험 중 필기시험의 문항 수 및 배점을 변경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29호 (2020.7.28.)	· 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비하고, 소극행정, 금품수수, 공금횡령 비위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간부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 상 미비점 개선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30호 (2020.7.27.)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이버직렬 일반군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과목을 신설하는 한편, 일반군무원 신규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의 평정요소를 정비하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면접시험의 평정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면접시험위원에게 제공하려는 것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제1032호 (2020.8.20.)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지원금 지급에 관한 국방부 장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33호 (2020.9.29.)	· 승선근무예비역과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서약서의 서식을 정하는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34호 (2020.10.21.)	·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국방부 본부 정원의 직렬을 일부 조정함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제1035호 (2020.11.24.)	·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군용항공기의 운항 및 군사격장에서 사격훈련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소음대책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방법을 정함

국회 국방위원회 구성 및 주요 활동

2020. 12. 31. 현재

수석전문위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입법조사관
1급 배용근	 <p>민홍철(61년생, 경남 김해시갑) 3선(19·20·21대) 부산대 법학과, 부산대 법학석사, 육군 법무관, 고등군사법원장, (예)육군준장, (전)변호사, (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현)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p>	<p>본관 421호 회관 554호 0)784-6490 784-6491 F)6788-6435</p>
전문위원		
2급 이신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p>황희(67년생, 서울 양천구갑) 재선(20·21대) 연세대 대학원 도시공학과 공학박사 (전)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청와대 행정관 (전) 대통령직속 4차위 스마트시티특위 위원</p>	<p>회관 838호 0)784-8551 784-8552 F)6788-7500</p>	 <p>한기호(52년생,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3선(18·19·21대) 육군사관학교 졸업 (전) 새누리당 강원도당위원장 (전) 육군 교육사령관(예 중장)</p>	<p>회관 908호 0)784-3860 788-3861 F)6788-7410</p>
 <p>안규백(61년생, 서울 동대문구갑) 4선(18·19·20·21대) 성균관대 및 동무역대학원 수료, 노무현대통령 직인수위 전문위원, 민주당 조직위원장, 국방위원장, 새정치연합원내수석</p>	<p>회관 807호 0)784-4180 788-4181 F)6788-6705</p>	 <p>신원식(58년생, 비례대표) 초선(21대) 국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전)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차장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예 중장)</p>	<p>회관 745호 0)784-9630 788-9631 F)6788-6685</p>
 <p>김병기(61년생, 서울 동작구갑) 재선(20·21대) 경희대 국민윤리학과 국정원 근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위원회 위원</p>	<p>회관 721호 0)784-1322 788-1323 F)6788-6170</p>	 <p>이채익(55년생, 울산 남구갑) 3선(19·20·21대) 울산대 일반대학원 행정학박사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전) 울산 남구청장 / 울산항만공사 사장</p>	<p>회관 844호 0)784-8011 788-8012 F)6788-7080</p>
 <p>설훈(53년생, 경기 부천시을) 5선(15·16·19·20·21대) 고려대 사학과 졸업 (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 농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장</p>	<p>회관 948호 0)784-8570 788-8571 F)6788-6620</p>	 <p>허태경(68년생, 부산 해운대구갑) 3선(19·20·21대) 서울대 물리학과, 중곡 지원대학교 대학원(세계 경제 박사), (사)열린북한방송 대표, SK텔레콤 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p>	<p>회관 916호 0)784-2491 788-2492 F)6788-7405</p>
 <p>김진표(47년생, 경기 수원시무) 5선(17·18·19·20·21대)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과,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민주당 최고위원, 원내대표</p>	<p>회관 744호 0)784-3807 784-3808 F)6788-6330</p>	 <p>강대식(59년생, 대구 동구을) 초선(21대) 영남대 학사 (전) 대구 동구청장 (전) 대구 동구의회 의장</p>	<p>회관 341호 0)784-5275 788-5276 F)6788-6010</p>
 <p>홍영표(57년생, 인천 부평구을) 4선(18·19·20·21대) 동국대,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 원내대변인, 민주통합당 정책위 수석부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p>	<p>회관 1004호 0)784-3143 784-3144 F)6788-7470</p>	 <p>윤주경(59년생, 비례대표) 초선(21대) 이화여자대학교 화학과(석사) (현) (사)매한유봉길 월진회 이사 (전) 독립기념관 관장 (전)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p>	<p>회관 828호 0)784-7057 788-7058 F)6784-6880</p>
 <p>박성준(69년생, 서울 중구성동구을) 초선(21대)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 박사 (전) JTBC 아나운서 (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p>	<p>회관 324호 0)784-8430 784-8431 F)6788-6480</p>	<h3>무소속</h3>	
 <p>김병주(62년생, 비례대표) 초선(21대)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p>	<p>회관 447호 0)784-4177 784-4178 F)6788-6185</p>		
 <p>김인기(66년생, 경기 용인을) 3선(19·20·21대) 고려대 농업경제학과 (전) 정보위원회 위원장 (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p>	<p>회관 945호 0)784-1930 784-1931 F)6788-6155</p>		

국회 국방위원회 주요 활동(2019. 1. ~ 2020. 12.)

회기	회의일자	주요내용
제20대 국회		
제367회 임시회 (2019.3.7.~4.5.)	2019.3.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보고(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상정 · 「병역법」등 법률안 50건 상정 · 「제50주년 SCM 계기 한미동맹 지속발전 결의안」, 「일본 자위대의 해상초계기 위협비행 사고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의결
	2019.3.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 「군인사법」 등 법률안 30건 의결
제369회 임시회 (2019.6.20.~7.19.)	2019.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현안보고(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 「국군조직법」등 법률안 49건 상정
제370회 임시회 (2019.7.29.~8.27.)	2019.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 현안보고(북 미사일 발사, 북 소형목선 상황,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 관련) ·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의결
	2019.8.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회계연도 결산안 상정 · 2018년도 국정감사 및 2017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 「5·18진상규명 특별법」 등 법률안 31건 의결
제371회 정기회 (2019.9.2.~12.10.)	20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회계연도 결산안 의결
	2019.9.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2019.9.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 「군인연금법」 등 법률안 14건 의결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법률안 25건 상정
	2019.10.2.~1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도 국정감사 실시
	2019.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도 예산안 상정
	2019.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도 예산안 의결 · 「군사기밀보호법」 등 법률안 6건 상정 ·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UAE군 지원 파견연장 동의안」 상정
제376회 임시회 (2020.2.17.~3.17.)	2020.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UAE군 지원 파견연장 동의안」 의결 · 「군사기밀보호법」 등 법률안 27건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현안보고(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등 법률안 27건 상정 · 「병역법 개정안」 1건 의결 · 「방위산업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의결
제377회 임시회 (2020.4.16.~5.15.)	2020.4.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법률안 6건 상정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의결

회기	회의일자	주요내용
제21대 국회		
제379회 임시회 (2020.6.5.~7.4.)	2020.6.22.	· 업무보고(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2020.6.29.	·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및 의결
제380회 임시회 (2020.7.6.~8.4.)	2020.7.28.	· 업무보고(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제381회 임시회 (2020.8.18.~8.31.)	2020.8.25.	· 2019회계연도 결산안 상정 · 2018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2020.9.1.	· 2019회계연도 결산안 의결
	2020.9.24.	· 국방부 긴급 현안보고(해수부 공무원 실종 관련) · 「북한 해수부 공무원 총격 무력도발 규탄 결의안」 의결
	2020.10.7.~10.26.	· 2020년도 국정감사 실시
제382회 정기회 (2020.9.1.~12.9.)	2020.11.9.	· 2021년도 예산안 상정 · 「통합방위법」 등 69건 상정 ·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UAE군 지원 파견연장 동의안」 상정 · 「방위산업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의결
	2020.11.12.	· 2021년도 예산안 의결
	2020.11.20.	·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법」 등 32건 의결 ·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UAE군 지원 파견연장 동의안」 의결
	2020.12.8.	· 「5·18진상규명 특별법 일부개정안」 의결

동영상



대한민국 국군
홍보영상
p50



육군 홍보영상
p51



해군 홍보영상
p51



해병대 홍보영상
p51



공군 홍보영상
p52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p55



일상을 지키는
대한민국 국군
p70



아나시스 2호 발사
p76



육군 KCTC 훈련
p86



해군 순항훈련
p87



공군 해상 조난자
합동 탐색구조 훈련
p88



대한민국의
인보를 지키는
예비군
p102



스마트 국방혁신
p112



대한민국 어군
70년 발자취
p123



평화를 만드는
강한 힘, 국군
p131



M-프렌즈
5기 출범
p131



제72주년
국군의 날 챌린지
p131



대체복무제도
개선
p135



2019 서울 ADEX
p150



2020 서울안보대화
p185



한빛부대
p195



청해부대 파견지역
한시적 확대
p197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p210



군 급식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p219



어머니 장병 급식
파복 모니터링단
p219



2019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
p234



6·25전쟁
전자자 유가족
DNA 시료 채취
p239



우리 군의
코로나19 대응
p285

색인

ㄱ

가상현실	45, 93, 103, 114, 116, 118, 265
과학화 경계시스템	55, 260
군비통제검증단	64, 344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45, 230
군인연금제도	237
군인 재해보상법	240, 241, 348, 353, 355, 358
국가감염병전담병원	73, 226, 282
국가안전대진단	70
국가직무능력표준	236
국군외상센터	115, 159, 224, 227, 282
국군포로	242, 250, 252, 253, 254, 347, 350
국방과학연구소	68, 118, 145, 148
국방 모바일보안 앱	211, 272, 274, 275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238, 344
국방신속지원단	73, 281
국방의료정보체계	115
국방자원 수명주기	44, 115
국방전략기술	109, 118, 157
국방정신전력원	85, 93, 344
국방헬프콜센터	214
국방 M&S체계	114
국제평화지원단	204
국제평화활동센터	202, 203, 204
국제해양방위산업전	69, 150
국제해양안보구상	198, 332
군복무 크레딧	216
군사분계선	246, 247, 252, 259, 260, 261, 298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142
군력보조형 로봇	117
급식자동측정시스템	115, 220
기본운용능력	91, 169, 171, 310, 324, 331

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244, 250, 251, 252, 315, 318
남북공동유해발굴	245, 247, 258, 261, 262, 263, 299, 303, 308

ㄷ

다련장	51, 53, 107, 108, 109, 157, 290, 324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	189, 190, 325, 332
대륙간탄도미사일	13, 15, 22, 28, 296
대체복무제	47, 135, 229, 231, 269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69, 150
동명부대	193, 194, 205, 341
드론	17, 51, 68, 80, 117, 142
드론봇 전투체계	51

ㄹ

마일즈 장비	86
만물인터넷	118
미러 신전략무기감축협정	12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118, 119, 148

ㅁ

방위력개선비	153, 154, 171
방위력개선사업	109, 111, 146, 147, 156, 356
방위비분담금	165, 166, 167, 326, 333, 335
방위비분담특별협정	166, 167, 326, 333
병영생활전문상담관	214, 275, 282
부사관 학군단	83, 84
북방한계선	21, 54, 55, 87, 245, 249, 259, 299, 323, 330
비무장지대	21, 180, 238, 245, 246, 247, 248, 249, 251, 258, 259, 260, 261, 262, 263, 299, 301, 303, 304, 322

ㅇ

사물인터넷	45, 116, 118, 158
상호군수지원협정	19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69, 150, 176, 179

서울안보대화	10, 69, 177, 178, 179, 181, 182, 184, 185, 186
성실수행인정제도	110, 146, 148
순항훈련	84, 87, 88, 182, 266, 314
스마트 국방혁신	44, 46, 112
스마트탄약고	116
스톡홀름 합의	22
신속시범획득사업	116

○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10, 187
아시아 지역 대화그룹	75
아크부대	178, 199, 200, 205, 341
아프리카돼지열병	63, 72
어머니 모니터링단	220
연합지휘소훈련	91, 310, 321
연합토지관리계획	165
예멘 협정지원임무단	196, 341
예비군훈련장	103, 156
오쉬노부대	196
완전운용능력	169, 170, 171
용산기지이전계획	165
우주상황인식	77, 163, 325, 332
우주작전대	17, 45, 76, 98
유엔 남수단임무단	195, 196
유엔 레바논평화유지군	194
위성감시통제대	76
을지태극연습	57, 70, 90, 309
인공지능	15, 83, 112, 113, 114, 118, 220, 325, 332

ㄷ

자기개발지원금	45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13, 22, 26, 28, 296
장병내일준비적금	2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70
정찰용 무인항공기	45, 108, 157

증강현실	114, 116, 118, 265
지원예비군	103
지체상금 상한제	110

ㄹ

청해부대	181, 196, 197, 198, 205
------	-------------------------

ㄴ

칸퀘스트 훈련	90
코브라골드 훈련	88

ㄷ

통합방위협의회	78, 79, 350, 354
통합재난관리시스템	73

ㄹ

판문점선언	20, 244, 245, 248, 249, 250, 251, 258
팔레스타인 정전감시단	193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100, 105
평양공동선언	20, 244, 245, 250, 258
플루토늄	28, 294, 295

ㅎ

한국방공식별구역	173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61, 157
한미 상호방위조약	53, 162
한미안보협의회의	14, 60, 77, 162, 163, 164, 167, 169, 170, 322, 329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187, 244
한빛부대	183, 193, 195, 196, 206, 283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173, 174
합성전장훈련체계	44, 114
해외긴급구조대	74, 198

해외파병 상비부대	204
핵·WMD 대응체계	61, 62
호국훈련	91, 321
혼합현실	118
화랑훈련	63, 91, 321
화학무기금지지구	64, 340
환태평양훈련	88, 90

A

ADEX	69, 150, 176
ADMM-Plus	10, 67, 69, 75, 88, 175, 184, 186, 202
AI	15, 66
AR	114, 265
ARF	10, 184, 187
ASF	63, 71, 72
ATT	189, 190, 340

B

BCTP	87
BWC	64, 188, 339

C

CCPT	91, 321
CPX	57, 91, 321
CWC	64, 188, 339
C4I	106, 167, 335, 336

D

DEMIS	115
DMZ	245, 246, 248, 258, 261, 267, 308, 309, 310, 329
DNA	238, 239, 240
DPAA	239, 240, 266
DX-Korea	69, 150

E

EU	9, 175, 179
----	-------------

F

FFX	107
FOC	169, 324, 331
FTX	57, 88
F-35A	21, 45, 53, 107, 108, 109, 155

G

GSOMIA	173
--------	-----

H

HEU	28
HGV	15
HUAV	107, 155

I

ICBM	13, 22, 28, 29, 313
INF	9
IOC	91, 169, 310, 324
IoE	118
IoT	116

J

JCPOA	9
-------	---

K

KADIZ	173, 174
KCTC	86
KDRT	199
KF-X	107, 108, 109, 157

KIDD 59, 162, 171
KMEP 90

L

Life-Cycle 44, 115
LPP 165, 335
L-SAM 98, 157
LVC 44, 114

M

MADEX 69, 150
MCM 162, 322, 324, 326, 329, 330, 331, 333
MDL 246
MR 118
MUAV 108, 157

N

NATO 9, 175, 179
NDAA 12, 13
NDS 11
NLL 21, 54, 55, 87, 259, 323, 330
NPR 60
NPT 188, 294, 339, 340
NSS 11

O

OPCW 64, 340

P

PBL 58, 155
PKO 16, 176, 177, 186, 202, 203
PSI 189, 191, 325, 340

S

SCM 14, 59, 162, 169, 191, 312, 322, 324, 326, 327, 329, 331, 333, 361
SDD 10, 69, 177, 184, 185
SLBM 13, 22, 26, 28, 296, 297, 311
SMA 166, 326
SNS 130, 273
SOFA 165, 166, 328, 335, 338

T

TPFDD 53, 54

V

VR 45, 92, 103, 114, 265

W

War-game 92
WMD 23, 46, 61, 62, 64, 106, 108, 154, 156, 157, 292, 325, 332, 366

Y

YRP 165

숫자

3D 스캐닝 115
4D 작전개념 60, 61
4D 전략 60, 61
9·19 군사합의 20, 21, 55, 131, 162, 185, 238, 244, 245, 246, 247, 248, 249, 258, 259, 260, 261, 263, 309, 315, 322, 323, 329